공문서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양형위원회

I. 대상범죄

1. 공문서범죄 일반

죄명	적용법조(형법)	법정형
공문서 위조·변조	§225	10년 이하
자격모용공문서작성·변개	§226	10년 이하
허위공문서작성·변개	§227	7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공전자기록위작·변작	§227의2	10년 이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228①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
면허증·등불실기재	§228②	3년 이하 또는 700만 원 이하
~행사	§229	위조 등과 같음
공문서부정행사	§230	2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미수	§235	

2. 통계자료

- 양형기초자료조사에 의하면, 공문서 관련 범죄의 죄명별 빈도수(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를 포함)는 다음과 같음

단위: 명, %

범죄유형	죄명	전	체
	공기호부정사용	41	3.8
	공문서변조	47	4.4
	공문서부정행사	36	3.4
 공문서범죄	공문서위조	330	31.0
86/104	공용물건손상	81	7.6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297	27.9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139	13.0
	변조공문서행사	7	0.6

범죄유형	죄명	전	체
	불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	17	1.6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1	1.0
	위조공문서행사	38	3.6
	특수공용물건손상	1	0.1
	허위공문서작성	21	2.0
	소계	1,066	100

3. 양형기준 설정범위

○ 미수범(형법 제235조)

- 제1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 중 살인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군에 대하여 미수범에 관한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
- 공문서범죄의 미수범은 실무상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미수범에 관하여 는 일관성 있는 기준 설정을 모색하여야 하므로 현단계에서 공문서 범 죄에 대한 미수범 기준 설정은 보류하는 것이 적절

○ 대상범죄

- 따라서 형법의 공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 제227조 의2, 제228조, 제229조, 제230조의 범죄를 대상범죄로 한정함

Ⅱ. 범죄유형 분류

1. 범죄유형 분류의 필요성

- 공문서범죄의 보호법익은 각종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임
- 공문서범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입법 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다양한 법정형으로 세분화된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음
 - 새로운 문서의 작성 여부라는 측면에서, 공문서위조·변조, 자격모용공문 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 공전자기록위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위와 같은 위조·변조등문서 행사, 공문서부정행사는 작성된 문서의 행사를 그 대상으로 함

- 작성권한의 여부라는 측면에서, 공문서위조·변조, 자격모용공문서작성, 공전자기록위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는 작성권한(자격을 포함)이 없거나 작성권한 없는 자를 이용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허위 공문서작성은 작성권한이 있으나 그 내용이 허위인 행위를 대상으로 함
- 공문서범죄의 보호법익, 특성, 법정형 및 선고형 분포 등을 충분히 고려 하여 일관된 원칙에 따른 유형 분류를 통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합리적으 로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비교법적 검토

가. 미 연방

- 연방 양형기준
- §2B1.1. 절도, 횡령 기타 다른 형태의 절도 : 장물범, 재물손괴 : 사기 : 문서위조, 정부 발행 지참인불증서(Bearer Obligation of the United States) 위・변조를 제외한 통화위조
 - a) 기초범죄 등급
 - 1) 7등급
 - A) 이 가이드라인에 언급된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거나,
 - B) 법정형이 구금형 20년 이상인 경우
 - 2) 6등급기타의 경우
 - b) 범죄특성에 기한 가감

(이하 위조와 관련될 수 있는 부분만 발췌)

- 9) A) 수사나 단속공무원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관할로 주소지를 이전 하거나 이전에 관여한 경우
 - B) 사기범행 계획의 중요 부분이 미국 외의 지역에서 행해진 경우
 - C) 정교한(복잡한) 범행수단이 사용된 경우 2등급 가중

최종 등급이 12등급 미만이면, 12등급으로 가중

- 10) A) i) 장치제조 설비,1) ii) 진본(authentication feature)을 보유, 사용한 경우
 - B) i) 비인가 접근장치 또는 위조(cunterfeit) 접근장치, ii) 진본 (authentication feature)을 제조, 거래한 경우
 - C) i) 권한 없는 신분증명수단2)을 거래, 사용하거나 기타 신분증 명수단을 불법적으로 제조, 획득하거나
 - ii) 다른 신분입증수단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제조되거나 획 득된 신분입증수단을 5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3)

2등급 가중

최종 등급이 12등급 미만이면, 12등급으로 가중

- 13) A) (최고치를 적용) 피고인이 다음 항에 따라 유죄를 받는 경우,
 - i) 18 U.S.C §1030
 - ii) 사법기관의 관리, 국가방위, 국가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중요 기간시설을 작동하거나 유지하는 데 사용되거나, 정부기관에 의하 여 또는 정부기관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산시스템에 관련된 경우
- 미 연방은 신분절도 및 위장방지법에 따라 신분증의 위조를 신분절도 및 위장으로 이해함
 - 18 U.S.C. §1028(d) 규정은 신분입증수단을 폭넓게 정의하고 있어, 신 규 또는 추가 형태의 신분입증수단을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은행대 출(서류)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b)(10)(C)는 주로 신규 또는 추가로 신분입증 형태를 증식·제족·획득하기 위하여 적극적 신분절도 또는 증식으로 알려진, 타인의 성명·사회보장번호 또는 다른 형태의 신분을 사용하여 행하는 가중된형태의 신분절도에 적용하기 위한 것임
 - 이런 유형의 범죄를 최소 12등급으로 한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

^{1) 18} U.S.C. §1029(e)(2)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의미이고, 권한 없이 통신용역을 얻기 위하여 변형, 개조된 통신도구를 포함한다.

^{2) 18} U.S.C. §1028(d)(7)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의미이다.

^{3) 18} U.S.C. \$1028에 위반되는 신분증과 관련한 범죄, 허위신분증, 신분입증수단은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의율된다. 범죄의 주요 목적이 귀화, 시민권 취득, 법적 거주지위와 관련된 법을 위반하거나 방조한 경우 \$2L2.1 (귀화 관련 문서의 거래), \$2L@.2 (귀화 관련 문서의 기망적 취득)을 적용한다.

이 절취당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임. 일반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전(신용이자비율에 관한 피해, 대출불가능 등)에 피해자가 이를 알기 어려움. 또한 수량화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범죄로인한 비금전적 피해(개인의 명성, 신용비율, 불편, 범죄로 발생하는기타 곤란 등)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임

- \$2B5.1. 정부 발행 지참인불증서(Bearer Obligation of the United States) 위조와 관련된 범죄
 - ☞ 공채증서의 위조로 통화위조와 유사함(내용 생략)
- §2B6.1. 수송수단 번호판의 변조, 제거 또는 번호판이 변조되거나 지 워진 수송수단 또는 수송수단의 부품 거래
 - (a) 기초범죄등급: 8
 - (b) 범죄특성에 기한 가감
 - 1) 수송수단 또는 부품의 소매가가
 - A) 2,000불 초과 5,000불 이하 1등급 가중
 - B) 5,000불 초과하는 경우 금액에 상응하는 §2B1.1.(절도, 손괴, 사기) 의 기준에 따란 등급수를 가중
 - 2) 장물을 취득, 판매하는 경우 2등급 가중
 - 3) 조직적으로 수송수단이나 수송수단의 부품을 절취하거나 훔친 수송수 단이나 수송수단 부품을 취득한 경우, 기준에 따라 결정된 범죄등급이 14등급 미만인 경우 14등급으로 가중

● §2L1.1. 불법외국인의 밀입국, 운송 또는 은닉

- (a) 기초범죄등급
 - (1) 25 : 피고인이 8 U.S.C. §1182(a)(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과 관련하여 8 U.S.C. §1327에 의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 (2) 23 : 피고인이 전에 가중된 중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추방된 외국 인과 관련된 위반행위로 8 U.S.C. §1327에 의하여 유죄를 선고 받은 경우
- (3) 12 : 기타
- (b) 범죄특성에 기한 가감
 - (1) (A) 범죄가 영리가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행해진 것이거나 범죄 가 피고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밀입국, 운송, 은닉과 관련된 것이고,
 - (B) 기초범죄등급이 (a)(3)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 3등급 감경
 - (2) 범행이 6명 이상의 불법외국인의 밀입국, 운송 또는 은닉과 관련될 경우 다음과 같이 가중
 - (A) 6~24명 3등급 가중
 - (B) 25~99명 6등급 가중
 - (C) 100명 이상 9등급 가중
 - (이하 공문서범죄와 무관, 생략)
- §2L1.2. 미연방에의 불법입국 또는 불법체류
 - (a) 기초범죄등급: 8
 - (b) 범죄특성에 기한 가감 (공문서범죄와 관련 없음, 생략)
- §2L2.1. 귀화, 시민권 또는 영주권 또는 미연방여권 관련 서류 거래 : 타인의 시민권이나 출입국자격과 관련된 허위신고 : 외국인의 이민법 회피를 위한 사기결혼
 - (a) 기초범죄등급: 11
 - (b) 범죄특성에 기한 가감
 - (1) 범죄가 이윤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행해지거나 범죄가 단지 피고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밀입국, 운송, 은닉과 관련된 경우 3등급 감경

- (2) 범행이 6매 이상의 서류나 여권과 관련된 경우
 - (A) 6~24매 3등급 가중
 - (B) 25~99매 6등급 가중
 - (C) 100매 이상 9등급 가중
- (3) 피고인이 여권 또는 비자가 이민법위반과 관련된 범죄가 아닌 중범 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믿었거나 믿 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4등급 가중

- (4) 피고인이
 - (A) 이민과 귀화범죄로 중죄 유죄선고를 받은 경우 2등급 가중
 - (B) 별개의 이민 또는 귀화범죄로 기소되어 2개 이상의 유죄선고를 받은 경우 4등급 가중
- (5) 피고인이
 - (A) 미국 여권을 기망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한 경우 4등급 가중
 - (B) 외국 여권을 기망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한 경우 2등급 가중
- §2L2.2. 본인의 사용을 위한 귀화, 시민권 또는 영주권에 관련된 서류를 기망에 의하여 취득하는 행위 ; 외국인의 이민법 회피 목적으로 인적사항 도용 또는 사기결혼 ; 미연방 여권의 기망에 의한 취득 또는 부적절한 사용
 - (a) 기초범죄등급: 8
 - (b) 범죄특성에 기한 가감
 - (1) 피고인이 본건 범행 이전 1회 이상 추방된 전력이 있는 불법외국인 의 경우 2등급 가중
 - (2) 피고인이
 - (A) 이민과 귀화범죄로 중죄 유죄선고를 받은 경우 2등급 가중
 - (B) 별개의 이민 또는 귀화범죄로 기소되어 2개 이상의 유죄선고를 받은 경우 4등급 가중

나. 영국

1) 일반 위조: 적용법률 Forgery and Counterfeit Act 1981 S1

- 법정형 상한 : 징역 10년
- 가중, 감경인자
 - 높은 이익 획득 또는 의도
 17,500 파운드 미만 : 최대 21월
 17,500 파운드 이상 10만 파운드 미만 : 2~3년
 10만 파운드 이상 25만 파운드 미만 : 3~4년
 25만 파운드 이상 100만 파운드 미만 : 5~9년
 100만 파운드 이상 : 10년
 - 전문적 또는 준전문적 피고인
 - 정교한(복잡한) 범행
 - 반복된 범행
 - 전문적인 특징
 - 기관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
 - 취약하 피해자

2) 건강 관련 서류의 위조 : 적용법률 S216 Mental Health Act 1983

- 법정형 상한 : 2년
- 가중, 감경인자
 - 서류의 성격과 수
 - 서류사용의 결과 또는 의도된 결과
 - 피해자에 대한 영향
 - 이익획득 목적 또는 기타 경제적 이유
 - 전문적 또는 준전문적 피고인
 - 반복된 범행
 - 정교한(복잡한) 범행
 - 전문적 특징

○ 양형기준 또는 양형기준 판결 없음

3) 인증서(Proof Marks) 위조 또는 변조 : 적용법률 S121 Gun Barrel Proof Act 1868

- 법정형 상한 : 2년
- 가중, 감경인자
- 석유배럴의 성격과 수
- 이익획득 목적 또는 기타 경제적 이유
- 반복된 범행
- 정교한(복잡한) 범행
- 전문적 특징
- 양형기준 및 양형기준 판결은 없음

3. 범죄유형화의 시도

가. 선고형 분포

1) 공문서범죄군 해당 사건의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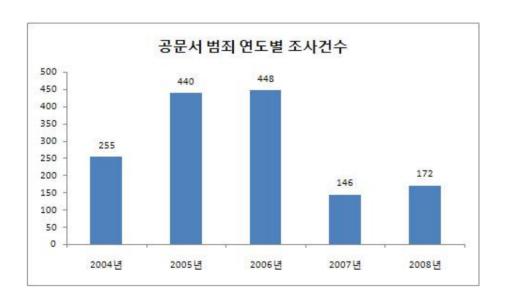
단위: 명, %

게 보기다				연도			નો <u>ગો</u>
세부죄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
공기호부정사용	수	6	6	10	0	0	22
6/12T/8/18	비율	27.3%	27.3%	45.5%	0.0%	0.0%	100.0%
공문서변조	수	8	12	13	3	2	38
중군시원소	비율	21.1%	31.6%	34.2%	7.9%	5.3%	100.0%
고묘지부정체기	수	9	11	11	20	21	72
공문서부정행사	비율	12.5%	15.3%	15.3%	27.8%	29.2%	100.0%
고무려하고	수	131	176	166	83	95	651
공문서위조	비율	20.1%	27.0%	25.5%	12.7%	14.6%	100.0%
공용물건손상	수	22	19	35	16	18	110
· · · · · · · · · · · · · · · · · · ·	비율	20.0%	17.3%	31.8%	14.5%	16.4%	100.0%
공전자기록불실기재	수	23	112	148	3	0	286
- 중산사기축출설기계 -	비율	8.0%	39.2%	51.7%	1.0%	0.0%	100.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수	39	59	15	0	2	115

단위: 명, %

세부죄명				연도			전체
세구의 경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세
	비율	33.9%	51.3%	13.0%	0.0%	1.7%	100.0%
변조공문서행사	수	0	2	2	0	0	4
전조 6 단시 생사	비율	0.0%	50.0%	50.0%	0.0%	0.0%	100.0%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수	0	8	15	3	8	34
물실기세등신사기측행사	비율	0.0%	23.5%	44.1%	8.8%	23.5%	100.0%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수	4	11	7	0	1	23
물실기세 6 경공시원근 행사 	비율	17.4%	47.8%	30.4%	0.0%	4.3%	100.0%
위조공문서행사	수	8	21	19	13	17	78
기소 6 단시 생사	비율	10.3%	26.9%	24.4%	16.7%	21.8%	100.0%
허위공문서작성	수	5	3	7	5	8	28
어케팅군시작성	비율	17.9%	10.7%	25.0%	17.9%	28.6%	100.0%
전체	수	255	440	448	146	172	1,461
신계	비율	17.5%	30.1%	30.7%	10.0%	11.8%	100.0%

2) 종국내역



단위: 명, %

게 보 기 다			종국	내역		ત્રી સ્ત્રી
세부죄명		실형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전체
공기호부정사용	수	2	20	0	0	22
6/1보구경사용	비율	9.1%	90.9%	0.0%	0.0%	100.0%
공문서변조	수	2	36	0	0	38
중군시 변소	비율	5.3%	94.7%	0.0%	0.0%	100.0%
공문서부정행사	수	3	11	56	2	72
· · · · · · · · · · · · · · · · · · ·	비율	4.2%	15.3%	77.8%	2.8%	100.0%
공문서위조	수	82	560	1	8	651
중단시 뒤소	비율	12.6%	86.0%	0.2%	1.2%	100.0%
공용물건손상	수	21	26	62	1	110
· 중공물신근상	비율	19.1%	23.6%	56.4%	0.9%	100.0%
공전자기록불실기재	수	21	234	31	0	286
· 중선사기국물실기재	비율	7.3%	81.8%	10.8%	0.0%	100.0%
고려즈니이ㅂㅂ시키케	수	11	91	13	0	11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비율	9.6%	79.1%	11.3%	0.0%	100.0%
변조공문서행사	수	0	4	0	0	4
전조 8 군시 생사	비율	0.0%	100.0%	0.0%	0.0%	100.0%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수	1	28	5	0	34
물실기세증신사기측행사	비율	2.9%	82.4%	14.7%	0.0%	100.0%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수	1	16	6	0	23
물실기세증성등시원관행사	비율	4.3%	69.6%	26.1%	0.0%	100.0%
위조공문서행사	수	9	68	0	1	78
기소 6 군 시 생사	비율	11.5%	87.2%	0.0%	1.3%	100.0%
허위공문서작성	수	1	4	20	3	28
의 제 중 군 시 삭 성	비율	3.6%	14.3%	71.4%	10.7%	100.0%
전체	수	154	1,098	194	15	1,461
신세	비율	10.5%	75.2%	13.3%	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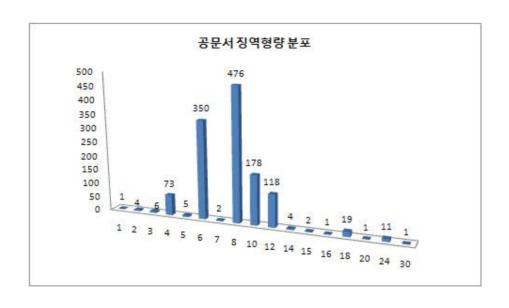
3) 형량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	량(개위	월)								전체
세구의경	1	2	3	4	5	6	7	8	10	12	14	15	16	18	20	24	30	전세
공기호부정	0	0	2	9	0	8	0	3	0	0	0	0	0	0	0	0	0	22
사용	0.0	0.0	9.1	40.9	0.0	36.4	0.0	13.6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0

단위: 명, %

ਐਮ ਤੀ ਜੀ								형	량(개위	월)								-rl =11
세부죄명	1	2	3	4	5	6	7	8	10	12	14	15	16	18	20	24	30	전체
	0	1	0	3	0	12	0	15	5	2	0	0	0	0	0	0	0	38
공문서변조	0.0	2.6	0.0	7.9	0.0	31.6	0.0	39.5	13.2	5.3	0.0	0.0	0.0	0.0	0.0	0.0	0.0	100.
공문서부정	0	0	0	4	0	3	0	4	3	0	0	0	0	0	0	0	0	14
행사	0.0	0.0	0.0	28.6	0.0	21.4	0.0	28.6	21.4	0.0	0.0	0.0	0.0	0.0	0.0	0.0	0.0	100.
	0	1	3	29	0	180	1	221	104	78	2	2	1	10	0	9	1	642
공문서위조	0.0	0.2	0.5	4.5	0.0	28.0	0.2	34.4	16.2	12.1	0.3	0.3	0.2	1.6	0.0	1.4	0.2	100.
공용물건	1	0	0	11	2	14	0	11	4	4	0	0	0	0	0	0	0	47
손상	2.1	0.0	0.0	23.4	4.3	29.8	0.0	23.4	8.5	8.5	0.0	0.0	0.0	0.0	0.0	0.0	0.0	100.
공전자기록	0	1	0	7	1	70	1	125	24	20	0	0	0	5	0	1	0	255
불실기재	0.0	0.4	0.0	2.7	0.4	27.5	0.4	49.0	9.4	7.8	0.0	0.0	0.0	2.0	0.0	0.4	0.0	100.
공정증서	0	0	0	4	0	19	0	55	13	8	2	0	0	0	0	1	0	102
원본불실기재	0.0	0.0	0.0	3.9	0.0	18.6	0.0	53.9	12.7	7.8	2.0	0.0	0.0	0.0	0.0	1.0	0.0	100.
변조공문서	0	0	0	0	0	1	0	1	2	0	0	0	0	0	0	0	0	4
행사	0.0	0.0	0.0	0.0	0.0	25.0	0.0	25.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0
불실기재공전	0	0	0	3	0	10	0	11	3	1	0	0	0	1	0	0	0	29
자기록행사	0.0	0.0	0.0	10.3	0.0	34.5	0.0	37.9	10.3	3.4	0.0	0.0	0.0	3.4	0.0	0.0	0.0	100.
불실기재공정	0	0	0	0	0	3	0	9	4	1	0	0	0	0	0	0	0	17
증서원본행사	0.0	0.0	0.0	0.0	0.0	17.6	0.0	52.9	23.5	5.9	0.0	0.0	0.0	0.0	0.0	0.0	0.0	100.
위조공문서	0	1	1	3	2	29	0	20	15	2	0	0	0	3	1	0	0	77
행사	0.0	1.3	1.3	3.9	2.6	37.7	0.0	26.0	19.5	2.6	0.0	0.0	0.0	3.9	1.3	0.0	0.0	100.
허위공문서	0	0	0	0	0	1	0	1	1	2	0	0	0	0	0	0	0	5
작성	0.0	0.0	0.0	0.0	0.0	20.0	0.0	20.0	20.0	40.0	0.0	0.0	0.0	0.0	0.0	0.0	0.0	100.
고 레	1	4	6	73	5	350	2	476	178	118	4	2	1	19	1	11	1	1,25 2
전체	0.1	0.3	0.5	5.8	0.4	28.0	0.2	38.0	14.2	9.4	0.3	0.2	0.1	1.5	0.1	0.9	0.1	100. 0



4) 실형시 형량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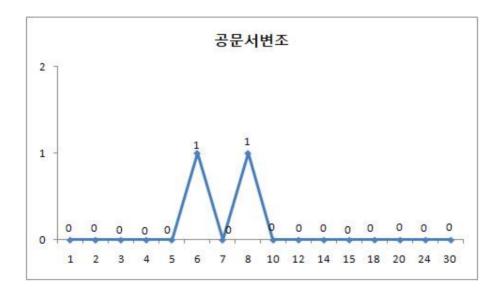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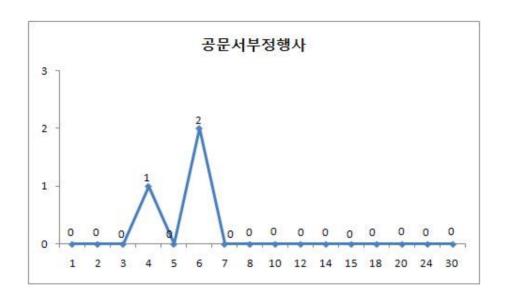
세부죄명								형	량								전체
세구의경	1	2	3	4	5	6	7	8	10	12	14	15	18	20	24	30	전세
공기호	0	0	0	1	0	1	0	0	0	0	0	0	0	0	0	0	2
부정사용	0.0	0.0	0.0	50.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공문서변조	0	0	0	0	0	1	0	1	0	0	0	0	0	0	0	0	2
6 단시 현소	0.0	0.0	0.0	0.0	0.0	50.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공문서	0	0	0	1	0	2	0	0	0	0	0	0	0	0	0	0	3
부정행사	0.0	0.0	0.0	33.3	0.0	66.7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공문서위조	0	1	1	6	0	16	1	14	9	13	0	2	9	0	9	1	82
5단시귀소	0.0	1.2	1.2	7.3	0.0	19.5	1.2	17.1	11.0	15.9	0.0	2.4	11.0	0.0	11.0	1.2	100.0
공용물건손상	1	0	0	4	1	5	0	5	2	3	0	0	0	0	0	0	21
중동조선도 3	4.8	0.0	0.0	19.0	4.8	23.8	0.0	23.8	9.5	14.3	0.0	0.0	0.0	0.0	0.0	0.0	100.0
공전자기록	0	1	0	1	0	2	0	1	6	6	0	0	3	0	1	0	21
불실기재	0.0	4.8	0.0	4.8	0.0	9.5	0.0	4.8	28.6	28.6	0.0	0.0	14.3	0.0	4.8	0.0	100.0
공정증서원본	0	0	0	1	0	0	0	4	1	2	2	0	0	0	1	0	11
불실기재	0.0	0.0	0.0	9.1	0.0	0.0	0.0	36.4	9.1	18.2	18.2	0.0	0.0	0.0	9.1	0.0	100.0
불실기재공전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
자기록행사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0.0	0.0	0.0	100.0
불실기재공정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증서원본행사	0.0	0.0	0.0	0.0	0.0	0.0	0.0	0.0	1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위조공문서	0	0	0	0	0	3	0	2	1	0	0	0	2	1	0	0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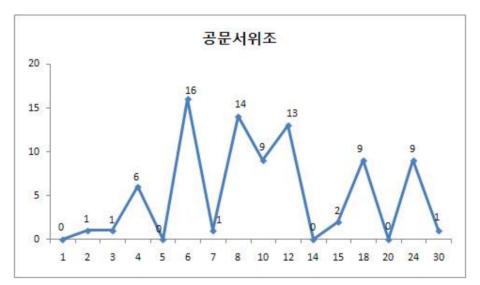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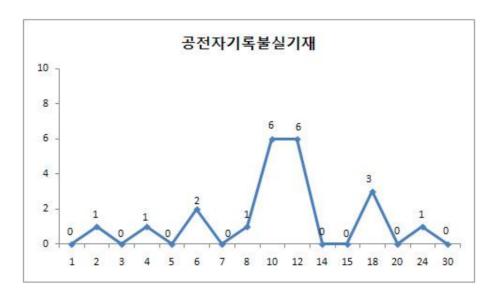
행사	0.0	0.0	0.0	0.0	0.0	33.3	0.0	22.2	11.1	0.0	0.0	0.0	22.2	11.1	0.0	0.0	100.0
허위공문서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1
작성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	0.0	0.0	0.0	0.0	0.0	0.0	100.0
전체	1	2	1	14	1	30	1	27	20	25	2	2	15	1	11	1	154
선세	0.6	1.3	0.6	9.1	0.6	19.5	0.6	17.5	13.0	16.2	1.3	1.3	9.7	0.6	7.1	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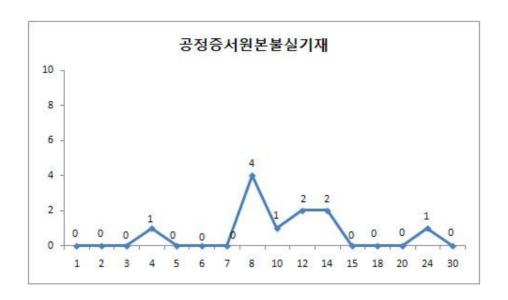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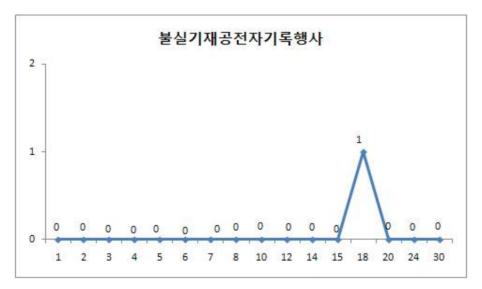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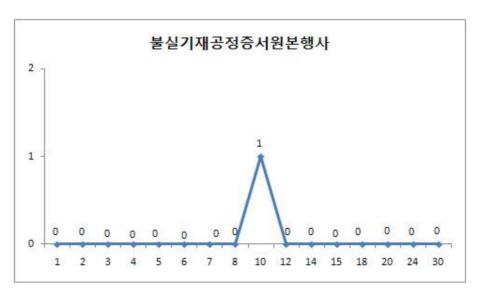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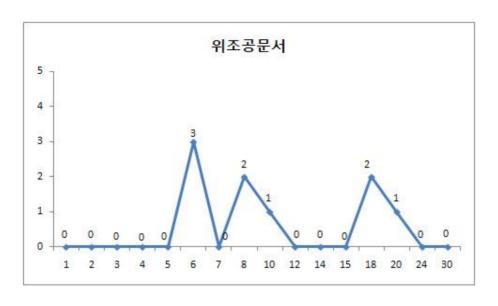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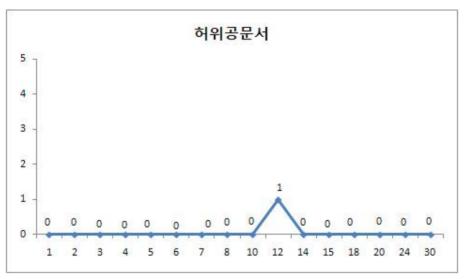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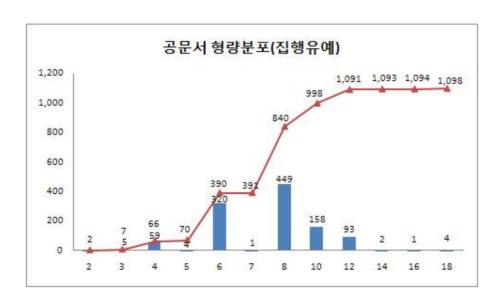
5) 집행유예시 본형 형량분포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개월)						전체
세구의정		2	3	4	5	6	7	8	10	12	14	16	18	전세
공기호부정사용	수	0	2	8	0	7	0	3	0	0	0	0	0	20
6기보구경사용	비율	0.0	10.0	40.0	0.0	35.0	0.0	15.0	0.0	0.0	0.0	0.0	0.0	100.0
코드기버크	수	1	0	3	0	11	0	14	5	2	0	0	0	36
공문서변조	비율	2.8	0.0	8.3	0.0	30.6	0.0	38.9	13.9	5.6	0.0	0.0	0.0	100.0
고묘기보기체기	수	0	0	3	0	1	0	4	3	0	0	0	0	11
공문서부정행사	비율	0.0	0.0	27.3	0.0	9.1	0.0	36.4	27.3	0.0	0.0	0.0	0.0	100.0
공문서위조	수	0	2	23	0	164	0	207	95	65	2	1	1	560

단위: 명, %

													2 1111	0, 70
	비율	0.0	0.4	4.1	0.0	29.3	0.0	37.0	17.0	11.6	0.4	0.2	0.2	100.0
공용물건손상	수	0	0	7	1	9	0	6	2	1	0	0	0	26
· 중출신관경	비율	0.0	0.0	26.9	3.8	34.6	0.0	23.1	7.7	3.8	0.0	0.0	0.0	100.0
공전자기록	수	0	0	6	1	68	1	124	18	14	0	0	2	234
불실기재	비율	0.0	0.0	2.6	0.4	29.1	0.4	53.0	7.7	6.0	0.0	0.0	0.9	100.0
공정증서원본	수	0	0	3	0	19	0	51	12	6	0	0	0	91
불실기재	비율	0.0	0.0	3.3	0.0	20.9	0.0	56.0	13.2	6.6	0.0	0.0	0.0	100.0
변조공문서행사	수	0	0	0	0	1	0	1	2	0	0	0	0	4
선조하군시 맹사	비율	0.0	0.0	0.0	0.0	25.0	0.0	25.0	50.0	0.0	0.0	0.0	0.0	100.0
불실기재공전자	수	0	0	3	0	10	0	11	3	1	0	0	0	28
기록행사	비율	0.0	0.0	10.7	0.0	35.7	0.0	39.3	10.7	3.6	0.0	0.0	0.0	100.0
불실기재공정	수	0	0	0	0	3	0	9	3	1	0	0	0	16
증서원본행사	비율	0.0	0.0	0.0	0.0	18.8	0.0	56.3	18.8	6.3	0.0	0.0	0.0	100.0
위조공문서	수	1	1	3	2	26	0	18	14	2	0	0	1	68
행사	비율	1.5	1.5	4.4	2.9	38.2	0.0	26.5	20.6	2.9	0.0	0.0	1.5	100.0
허위공문서	수	0	0	0	0	1	0	1	1	1	0	0	0	4
작성	비율	0.0	0.0	0.0	0.0	25.0	0.0	25.0	25.0	25.0	0.0	0.0	0.0	100.0
전체	수	2	5	59	4	320	1	449	158	93	2	1	4	1,098
선세	비율	0.2	0.5	5.4	0.4	29.1	0.1	40.9	14.4	8.5	0.2	0.1	0.4	100.0



6) 징역형 평균형량

단위: 명, 월

세부죄명	실형/집행유예	수	평균	표준편차
	실형	2	5.000	1.4142
공기호부정사용	집행유예	20	5.200	1.6092
	합계	22	5.182	1.5625
	 실형	2	7.000	1.4142
공문서변조	집행유예	36	7.389	2.1815
	합계	38	7.368	2.1362
	실형	3	5.333	1.1547
공문서부정행사	집행유예	11	7.273	2.4121
	합계	14	6.857	2.3157
	실형	82	11.317	6.4308
공문서위조	집행유예	560	8.089	2.2081
	합계	642	8.502	3.2620
	실형	21	7.048	2.9913
공용물건손상	집행유예	26	6.423	2.1573
	합계	47	6.702	2.5530
	실형	21	11.238	5.0784
공전자기록불실기재	집행유예	234	7.778	1.9239
	합계	255	8.063	2.5169
고기조기이버	실형	11	11.091	5.2432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집행유예	91	7.978	1.7255
출연기세	합계	102	8.314	2.5133
버크고묘기케기	집행유예	4	8.500	1.9149
변조공문서행사	합계	4	8.500	1.9149
보시키케코키키키르	실형	1	18.000	
불실기재공전자기록	집행유예	28	7.214	1.9121
행사	합계	29	7.586	2.7453
비지하하고하조기	실형	1	10.000	
불실기재공정증서	집행유예	16	8.250	1.6125
원본행사	합계	17	8.353	1.6179
	실형	9	11.111	5.8405
위조공문서행사	집행유예	68	7.485	2.4464
	합계	77	7.909	3.2003
	실형	1	12.000	
허위공문서작성	집행유예	4	9.000	2.5820
	합계	5	9.600	2.6077

단위: 명, 월

세부죄명	실형/집행유예	수	평균	표준편차
	실형	154	10.481	5.7997
합계	집행유예	1,098	7.838	2.1530
	합계	1,252	8.163	2.9888

7) 선고형의 개략적 분포 상황

○ 위 통계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공문서범죄의 선고형 분포는 다음 표와 같다고 추정할 수 있음

단위: 명, 월, %

					1심 선고		
	~6월		^	-12물	~18월	~24월	~30월
공문서부정행사							
공문서위조							
공문서변조							
위조공문서행사							
변조공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공전자기록)행사							
허위공문서작성							

8) 법정형 및 선고형 분포의 종합적 검토

○ 법정형

- 상한이 7년 이상 : 공문서위조·변조, 자격모용공문서작성·변개, 허위공 문서작성·변개, 공전자기록위작·변작 및 동 행사
- 상한이 5년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
- 상한이 3년 이하 : 면허증등불실기재 및 동 행사, 공문서부정행사

○ 선고형

- 높은 선고형 : 공문서위조·변조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 중간 선고형 : 허위공문서작성, 변조공문서행사, 불실기재공정증서행사
- 낮은 선고형 : 공문서부정행사죄
- 높은 선고형을 결정한 양형인자(뒤의 양형인자 분석 결과 참조)
 - 공문서위조 : 위조조직의 우두머리 또는 간부급, 상급전달책, 위조문서 판매를 통한 의뢰자 모집, 반복된 위조행위, 학력위장, 공문서위조를 다른 재산범죄 등에 이용하려고 한 경우 등
 - 허위공문서작성 : 이득자와 조직적·지속적 결탁관계를 갖는 경우, 피해 자의 피해회복이 어렵게 된 경우, 범행횟수 등
 - 공문서등 부정행사 : 지명수배 또는 체포 중 신분은폐를 위한 신분증 부정행사

나. 구성요건, 법정형 및 선고형을 종합한 유형분류기준의 설정

- 공문서범죄는 새로운 허위문서의 작성인지, 적법한 문서의 행사인지에 따라 구성요건이 다르고, 법정형 및 선고형에 있어 차이가 남
- 새로운 허위문서의 작성에는 공문서 위조·변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해당되고, 적법한 문서의 행사에는 공문서 부정 행사가 해당함
- 허위문서의 행사는 적법한 문서의 행사와는 법정형 및 선고형의 차이 가 크고 허위문서의 작성 유형과 유사하므로 새로운 허위문서의 작성 유형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 새로운 허위문서의 작성 유형 중 허위공문서 작성은 주체, 범행태양, 형량분포 및 양형인자가 다르므로 별도의 유형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 음
- 높은 선고형을 결정한 양형인자를 종합해서 공통되는 속성을 추출해 보면, 공문서 위조·변조 등에 있어서는 영업적, 조직적 위조·변조가, 허 위공문서 작성에 있어서는 적극적 불법목적을 가진 경우가 보다 높은 선고형을 결정한 인자임을 알 수 있음(공문서 부정행사의 경우 선고형 의 범위가 2월~10월에 모여 있어 세부적으로 유형을 구분하기에 적합 하지 않고, 높은 선고형을 결정한 양형인자를 가중인자로 취급하는 것

이 타당함)

○ 따라서 공문서범죄는 ① 공문서 위조·변조 등(행사 포함)의 경우, ②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등의 경우, ③ 공문서 등 부정행사의 경우로 크게 유형구분을 한 후, 각 유형 내에서는 영업성·조직성 여부 또는 적극적목적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유형을 세분하는 것이 타당함

4. 구체적 유형화 방안

가. 공문서 위조·변조 등의 경우

- 1) 설정방식의 개요
 - 위·변조의 영업성·조직성 유무에 따라 유형을 2개로 구분함
 - 위조죄와 동 행사죄는 동일하게 취급하되, 동일문서를 위조한 후에 행사에 경우에는 별도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행 사행위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 공문서변조죄는 위조죄와 동일하게 취급하되, 변개의 범위가 협소하 거나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일반감경사유로 반영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종전 양형실무를 반영하여 위조죄와 동일 하게 취급하되, 법정형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일반감경사유로 반영

2) 적용범위

- 공문서위조·변조(제225조), 동 행사(제229조)
- 자격모용공문서작성·변개(제226조), 동 행사(제229조)
- 공전자기록위작·변작(제227조의2), 동 행사(제229조)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제228조 제1항), 동 행사(제229조)
- 3) 유형의 구분
- ▶ 제1유형 : 비영업적·비조직적 위조·변조행위 등
 -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위조·변조행위 등
- ▶ 제2유형 : 영업적 또는 조직적 위조·변조행위 등
 - 영업적 또는 조직적이라 함은 위조·변조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우두머리·알선책·전달책 등의 조직을 갖춘 경우를 의미함
-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례 : 공문서범죄에 있어서 위·변조 등을 행한 자 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함으로써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양형인자로 만 취급한다.

나.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등의 경우

- 1) 설정방식의 개요
 - 공문서 위·변조와 범행목적이나 범행의 동기가 다르므로 별도의 양형 기준표를 제시
 - 단순한 직무수행과정에서 편법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와 이익취득 등 적극적인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로 유형을 구뷰
 -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벌금형 선택기준은 제시하지 아니함

2) 적용범위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제227조), 동 행사(제229조)
- 3) 유형의 구분
- ▶ 제1유형 : 직무상 편의, 편법적 직무수행 등 소극적 목적에 따른 행위
 - 현지 확인 없이 그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 보조자가 행한 행위를 감독자가 직접 담당한 것으로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 직무상 과실 등을 숨기기 위한 경우
- ▶ 제2유형 : 이익을 취득하게 할 적극적 목적에 따른 행위
 - 허위 수사·조사 서류 작성
 - 피감독자에 대한 편의 제공
 - 이익 획득 또는 의도로 허위공문서 작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다. 공문서등 부정행사의 경우

- 1) 설정방식의 개요
- 선고형의 범위가 2월 ~ 10월 사이에 모여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단순화 를 위해서 세부 유형구분을 하지 않음
- 선고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유형구분의 기준으로 삼는 대신 양 형인자로만 취급함

- 2) 적용범위
- 공문서등 부정행사(제230조)

Ⅲ. 형량범위

1. 개요

가. 형량범위 설정상 고려사항

- 공문서범죄는 사문서범죄와 함께 대표적인 문서에 관한 범죄인 동시에 사문서에 비하여 보호법익으로서 거래상의 사회적 신용성이나 안전성 이 커서 대체로 사문서범죄에 비하여 법정형 및 선고형이 높으므로 양 자의 관계에 유의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여야 함
- 현실에 있어서 공문서범죄는 사기죄가 경합범인 경우가 많은바, 이러한 경우 경합범의 처리기준을 공문서범죄의 양형기준에 둘 것인지, 사기범 죄의 양형기준에 둘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사기죄는 공문서범죄 뿐만 아니라 사문서범죄와의 경합범이 많으므로 세 범죄 간의 통일적 기준을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사기죄에서 공문서 또는 사문서범죄와의 경합범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나. 형량범위 설정의 출발점

- 공문서범죄를 ① 공문서 위조·변조 등(행사 포함)의 경우, ②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등의 경우, ③ 공문서 등 부정행사의 경우로 크게 유형구분을 한 후, 각 유형 내에서는 영업성·조직성 여부 또는 적극적 목적의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유형을 세분할 경우, 영업성·조직성 여부 또는 적극적 목적의 유무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이러한 경우 세부 유형의 권고형량범위가 크게 차이 난다면 불합리한양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서 유형간의 형량 범위가 다소 중첩되도록 형량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초안의 형량범위는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함
- 또한 개별 양형인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일 유형 내에서 영역간 형량범위의 중첩을 허용함

2. 유형분류에 따른 선고형 분포

○ 유형별 형량범위 분포

- 운영지원단이 보고한 통계에는 죄명별, 구성요건별 분류에 따른 평균형 량과 선고형 분포만 분석되어 있음
- 분석대상이 되는 통계자료는 제1기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의 방식을 정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43,000여건의 범죄 중 공문서범죄에 관한 것임
- 위 통계자료는 공문서범죄만을 염두에 두고 양형기준 설정에 필요한 양형인자를 모두 포섭하고 수집·분석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양형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양형기준 초안에 따른 유형분류에해당하는 양형인자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분석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바,양형기준 초안에서는 추후보완 사항으로 남겨두었음
- 양형통계자료 중에서 앞에서 설정한 유형구분에 가까운 양형인자를 중심으로 유형분류에 따라 대상범죄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 형량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구체적 범죄유형별 형량분포

[공문서 위조·변조 등의 경우]

			형량						-3 -9
		~ 6월	~ 8월	~ 10월	~ 1년	~1년6 월	2년	2년6월	전체
제1유형	수	378	452	166	100	22	10	1	1129
(비영업적·비조직적 위·변조)	비율	33.5	40.0	14.7	8.9	1.9	0.9	0.1	100.0
제2유형	수	3	4	4	8	2	2	0	23
(영업적·조직적 위·변조)	비율	13	17.4	17.4	34.8	8.7	8.7	0	100
전체	수	381	456	170	108	24	12	1	1,152
신세	비율	33.1	39.6	14.8	9.4	2.1	1	0.1	100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등의 경우]

			전체			
		~ 6월	~ 8월	~ 10월	~ 1년	선세
제1유형	수	2	2	0	0	4
	비율	50.0	50.0	0.0	0.0	100.0
제2유형	수	1	0	1	2	4

	비율	25.0	0.0	25.0	50.0	100.0
전체	수	3	2	1	2	8
신세	비율	37.5	25.0	12.5	25.0	100.0

[공문서등 부정행사의 경우]

			전체		
		~ 6월	~ 8월	~ 10월	선세
코디지드 바퀴웨기	수	7	4	1	12
공문서등 부정행사	비율	58.3	33.3	8.3	100.0

3. 죄명별 평균형량

가. 기초분석

○ 통계자료

- 형량범위나 유형구분에 참조할 형량은 실형사건을 기초로 살펴보는 것이 보다 적절함
- 아래 통계수치는 실형선고 사건에 관한 것임

죄명	수	평균형량
공문서위조	82	11.317
 위조공문서 행사	9	11.111
공문서변조	2	7.000
변조공문서 행사	0	
 공전자기록불실기재	21	11.238
물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	1	18.00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1	11.091
물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	1	10.000
허위공문서 작성	1	12.000
- 공문서부정행사	3	5.333

○ 평균형량의 분포 현황

- 빈도수가 적은 공문서변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공문서부정사용은 통계적 의미가 적음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은 대체로 11개월 남짓의 평균형량을 보이고 있음

나. 죄명별 형량비교

○ 행사죄와 본죄의 형량비교

- 공문서위조와 동행사죄는 평균형량이 비슷함
- 변조공문서행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는 실형선고 피고인의 수가 적어 통계적 의미를 파악하기 곤란
- 위 통계분석만으로는 행사죄가 본죄보다 더 경한 형이 선고된다고 보기 어려움

○ 공문서 위조죄와 공전자기록/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형량비교

- 공문서 위조죄와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의 평 균형량은 큰 차이가 없음
- 반면, 법정형은 공문서위조죄가 10년 이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가 5 년 이하로서 큰 차이가 있음
- 양형기준 초안은 위와 같은 법정형 차이와 양형통계상 평균형량의 유사 성 양자를 모두 수용하기 위하여 <u>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인 경우를 일반감</u> 경인자로 설정하고 있음

○ 공문서위조와 공문서변조

- 공문서변조죄의 형량이 공문서위조죄보다 낮지만 그 표본수가 적어 통계 적 의미를 두기 어려움
- 공문서위조와 공문서변조가 일반적으로 양형책임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양형실무가의 일반적 인식인데, 양형통계도 이를 반영하고 있음
- 다만, 양형기준 초안은 "변조부분이 문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설정하고 있는데, 위 통계자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양형사유는 통상적인 공문서변조보다는 양형책임을 낮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와 공정증서워본불실기재죄

- 양죄의 평균형량이 비슷하여 처벌수위를 동등하게 취급하여도 무방
- 양형기준 초안도 이를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아니함

4. 공문서 위ㆍ변조의 권고형량 설정의 접근방식

가. 개요

○ 통계분석결과의 활용

- 양형기준 초안이 제시한 권고형량이 앞의 형량분포의 현황과 평균형량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 요망
- 실형을 기준으로 할 때 공문서 위·변조의 경우는 양형통계를 활용하기에 문제가 없으나, <u>허위공문서 작성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경우에는</u> 통계의 표본수가 적어 권고형량범위를 설정하는 데 큰 참조가 되기 어려움
- 만일 이들 범죄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면, 불가피하게 공문서 위·변조의 경우를 참조하여 그 보다 낮게 설정하는 방법론을 취할 수 밖에 없음
- 이러한 형량범위의 설정도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문서 부정행사가 공문서 위조보다는 낮은 형이 선고된다는 양형실무례와 그에 관한 양형실무가의 인식이 존재하므로 전적으로 종래의 경험적 양형실무를 도외시한 것이라 고 볼 수 없음

○ 유형별 권고형량에 대한 검토

- 제1유형은 불법목적 위·변조행위로서 위조범죄의 일반적 형태이므로, 그 적용빈도가 가장 높고, 통상적인 위조범죄에 적용된 권고형량범위가 설정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제2유형은 전문적 위조범죄단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특별히 양형책임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는 유형이므로, 권고형량범위 설정에 있어서 규범적 조정도 가능함

나. 제1유형

○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 양형기준 초안의 제2유형이 위조범죄의 통상적인 행위가 포섭되는 유형 인데, 기본영역의 권고형량이 1년~2년6월로서 위 평균형량통계 11~12 개월보다 다소 높은 편임

- <u>경험적 통계수치에 보다 충실한다면 8월~2년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u>할 수 있는데, 수정안은 이를 반영하였음
- 권고형량범위의 중간점을 평균형량에 맞춘다면 권고영역의 상한을 그보다 더 낮추어야 하지만 이것은 양형의 엄정성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점, 미국 연방의 경우에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서 선고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권고형량범위의 중간점이 평균형량을 반영하도록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 양형기준 초안이 제시한 감경영역의 하한은 6월이고, 기본영역과는 6개월 중첩되는 형량범위가 마련되어 있음
- 공문서위조죄의 양형통계에 의하면 실형시 형량분포의 비율이 4월(7.3%), 6월(19.6%), 10월(11.0%), 12월(15.9%), 1년6월(11.0%), 2년(11.0%) 등을 보이고 있음
- 수정안 제1유형의 감경영역의 하한을 4월로 설정한 것은 위 통계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 양형기준 초안이 제시한 가중영역의 상한은 3년이고, 기본영역과는 6개 월의 중첩을 보이고 있음
- 양형통계상으로는 2년을 초과하는 실형사례가 많지 않지만 양형기준의 포섭율을 높이려면 상한은 그보다 높게 조정하여 3년으로 설정하더라도 무방함(법정형의 상한이 5년과 10년인 점을 고려할 수 있음)
- 가중영역의 하한은 1년6월로서 이를 하한으로 하는 사건비율이 양형통계 상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2유형이 기본유형으로 적용빈도수가 많다고 본다면 위와 같은 하한의 설정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다. 제2유형

○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 제2유형의 기본영역은 1년6월~3년으로서 제1유형의 가중영역과 동일함
- 공문서위조의 형량분포 비율의 상위에 속하는 형량이 포섭되고 있으므로 적정하다고 보임

○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 제2유형의 감경영역은 1년~2년6월로서 제1유형의 기본영역보다 다소 높지만, 제2유형의 양형책임이 무거운 점을 감안하면 그와 같이 설정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기본영역과는 6개월 정도 중첩을 보이고, 그 하한이 1년으로서 공문서위 조의 형량분포비율을 고려할 때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가장 무거 운 유형인 제3유형에 걸맞는 형량이라고 보임

○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 제3유형의 가중영역은 2년6월~5년으로서 종래의 양형실무와 비교하여 중하게 설정되어 있음
- 그 하한인 2년6월은 기본영역의 상한과 6개월 중첩되면서도 양형실무상 나타나고 있으나, 그 상한인 5년은 실무상 잘 나타나지 않은 형량임
- 이는 제3유형의 범죄특성상 엄벌이 필요한 중대한 범죄로서 규범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만일, 이러한 규범적 조정이 부적절하다면 이를 낮추는 재조정을 하여야 하고, 이렇게 되면 기본영역과 다른 유형의 형량범위와의 균형도 검토 필요

5. 권고형량범위

가. 개요

- 공문서 위조·변조는 실형선고 사례를 중심으로 권고형량의 설정방법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살펴보았음
- 이에 따라 양형기준이 제시할 권고형량범위를 설정해 보면 아래와 같음
-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실형선고 사례가 많지 않아 전체 징역형의 선고형 분포를 중심으로 권고형량범위를 잠정적으로 설정해보면 아래와 같음

나. 형량범위

(1) 공문서 위조·변조 등의 경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제2유형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등의 경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제1유형	- 8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제2유형	6월 - 1년6월	8월 - 2년	1년6월-2년6월

(3) 공문서등 부정행사의 경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공문서 등 부정행사	- 6월	4월 - 10년	6월 - 1년6월

Ⅳ. 양형인자의 결정

1. 통계분석

가. 개요

○ 분석의 한계

- 양형통계자료가 공문서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만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으므로 현단계에서 공문서 범죄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양형인자들만을 대상으로 상세한 통계분석을 하기는 곤란한 사정이 있음
- 또한 통계분석의 방법론은 당해 양형인자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설·검증의 방법으로 파악하므로 그 영향력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기어렵고, 이는 회귀분석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대략적인 영향력의 과다만을 파악하는 데 그치므로 마찬가지의 한계가 있음

○ 경험적 양형실무의 반영과 규범적 양형조정의 관계

- 경험적 양형실무를 양형기준에 반영한다는 것이 반드시 통계분석을 통하여 명확하고 유의미하게 밝혀진 것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경험적 양형실무를 파악하려는 양형통계분석이 통계자료의 적절한 수 집·입력의 오류, 충분한 대상표본의 부족, 조사대상의 양형인자나 양형 요소의 설정 미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실제로 존재하는 과거의 양형실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임
- 한편, 경험적 양형실무는 통계적 유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양형실무상 많이 등장하는 사례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양형인자나 양형실무가가 양형에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는 양형요소가 존재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 이것 또는 경험적 양형실무라고 볼 수 있음
- 요약하면 <u>경험적 양형실무를 반영한다는 것은 통계자료에만 의존한다는</u> <u>것이 아니라 과거의 양형실무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u>로 받아들 이는 것이 타당함
- 반면, 규범적 양형조정은 과거의 양형실무례를 규범적 관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양형인자를 추가로 설정하거나 권 고형량범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함
- 경험적 양형실무를 반영한다는 입장은 과거의 양형실무례가 존재하기만 하면 그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양형기준에 고려하려는 태도를 취하지만, 규범적 조정을 한다는 입장은 과거의 양형실무례 중에서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를 수정·변경하는 것임
- 따라서 규범적 조정이라고 하여 과거의 양형실무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님

○ 양형기준 초안의 부합 여부 검토

- 양형기준 초안이 검토한 양형인자는 운영지원단의 상세한 통계분석결과 가 나오기 전의 상태에서 논의된 것임
- 양형기준 초안의 양형인자가 통계자료의 분석결과와 부합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점검과정이 필요
- 아래에서는 운영지원단의 통계분석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양형인자에 관하여 검토
 - ☞ 상세한 내용은 덧붙임 [공문서 관련 양형인자 통계분석] 참조

나. 공문서위조

○ 분석대상

실형 여부	피고인의 수 (명)	평균 형량 (월)
실형	82	11.317
집행유예	560	8.089
합계	642	8.502

○ 통계분석상 유의미한 양형인자

유의미한 양형인자	형량의 순서 (형량/단위 : 월) 또는 상관계수
사선 변호인 유무	사선(9.560) ⇒ 국선(8.956) ⇒ 없음(7.779)
성별	남자(8.701) ⇒ 여자(7.921)
 주거	부정(9.545) ⇒ 일정(8.423)
피고인 재산	없음(8.884) ⇒ 있음(8.124)
 가족의 관심	높음(10.000) ⇒ 낮음(9.559) ⇒ 보통(8.433)
제37조 전단 경합범	해당(9.104) ⇒ 아님 (7.917)
경제적 이득취득	있음(10.287) ⇒ 없음(8165)
전문적 인쇄기 사용	있음(12.667) ⇒ 없음(8.454)
문서 등의 종류	기타(10.083) ⇒ 일반문서(8.313)
공문서의 종류	주민등록표(9.050) ⇒ 기타(8.633) ⇒ 운전면허증 (7.815) ⇒ 인감증명서(7.500) ⇒ 학업관련증명서 (6.475)
명의자의 수	상관계수 0.263
공범의 수	상관계수 0.099
이종 전과 수	상관계수 0.050

- 경제적 이득취득이 있는 경우가 형이 더 높아서 공문서범죄가 사회적 법 익을 침해하는 범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경제적 이득 목적이나 그 취득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적 양형인자라고 파악됨
- 전문적 인쇄기를 사용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형량이 높

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위조의 방법도 양형인자로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문서의 종류도 일반적 문서보다는 비일반적 문서의 경우도 형량이 높고, 명의자의 수가 많으면 형량이 높게 나타남
- 공범의 수가 많을 때 형량이 높게 나타남 ⇒ 집단적, 조직적 범죄를 무 겁게 처벌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음

○ 양형기준 초안의 양형인자에의 반영 검토

(경제적 이득 취득)

- "경제적 이득 취득"과 관련해서는 양형기준 초안은 "이득액 500만원 미만 "을 특별감경인자로, "이득액 3,000만원 이상"을 특별가중인자로 설정4)
- 그러나 금액을 기준으로 양형인자를 배열하는 것은 공문서범죄가 재산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법익 침해죄라는 것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위조 공문서를 사용하여 재산적 이득을 취득하면 사기죄, 배임죄 등 다른 재산범죄도 함께 저지르게 될 것이므로 구체적인 이득액은 그 재산범의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가중의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금액을 확정하기도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 이득 취득과 관련되는 양형인자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문적 인쇄기 사용)

- "전문적 인쇄기 사용"과 관련하여 양형기준 초안은 "전문위조장비를 사용한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문서 등의 종류)

- 일반문서보다 기타문서를 중하게 고려하는 양형분석결과는 "판결문, 여권에 대한 위·변조의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있음
- 양형통계자료조사표에는 문서의 종류를 ① 일반 종이문서, ②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③ 진단서, ④ 기타로 구분하였고, 구체적인 공문서의 종류도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본 포함), ② 운전면허증, ③ 인감증명서, ④ 학위증명서, ⑤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되었을 뿐임
- 기타문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하지만, 양형실무상 진정성이 강하 게 보호될 것이 요청되는 판결서나 여권을 예시하여 일반감경인자로 설 정함

⁴⁾ 통계분석 자체만으로 이득액에 따라 양형에 미치는 계수가 정확하게 산출되기 어려우므로 500만원-3,000만 원을 기본형태로 보고 그 미만을 특별감경, 그 이상의 특별가중으로 설정

- 양형통계분석에 의하면, 주민등록표 위조의 경우에도 양형이 높게 나타 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함
- 다만, 주민등록표는 재산취득의 목적으로 위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 산취득의 금액이 큰 사례가 포함되어 평균형량이 높아졌을 수 있는데, 이득취득과 관련하여 이중적 평가가 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함

(명의자의 수)

- 양형기준 초안은 명의자의 수를 양형인자에 직접 반영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경합범으로 취득될 여지가 많음을 고려한 것임
- 하나의 문서에 명의자가 수인인 경우와 같이 실체적 경합범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양형기준의 반영 여부 검토 (공범의 수)
- 양형기준 초안은 "조직적 위조·변조행위"를 유형구분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가중된 형량을 권고하면서, 다시, 그 중에서도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 전달자"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다. 공문서 변조

○ 분석대상

실형 여부	피고인의 수 (명)	평균 형량 (월)
실형	2	7.000
집행유예	36	7.389
<u>합</u> 계	38	7.368

- 의 실형선고 건수가 극히 적어 실형사례에서 양형인자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음
- □ 실형의 형량이 집행유예 형량보다 낮아서 어떤 양형인자가 실형에 영향일 미칠 경우에 그 양형인자가 형량을 낮게 만드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형량에의 영향여부로 특정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서의 의미에 비중을 두기도 곤란

○ 통계분석상 유의미한 양형인자

- 피고인의 학력, 피고인의 재산, 피고인이 장애인인지 여부
- 초범 여부5), 이종전과 여부6), 이종전과의 수7), 집행유예기간 여부8),

- 범행방법으로 컴퓨터 사용9
- 변조문서의 수10)

라. 위조공문서 행사

○ 분석대상

실형 여부	피고인의 수 (명)	평균 형량 (월)
 실형	9	11.111
집행유예	68	7.485
 합계	77	7.909

○ 통계분석상 유의미한 양형인자

유의미한 양형인자	형량의 순서 (형량/단위 : 월) 또는 상관계수
변호인	사선(9.333) ⇒ 국선(8.455) ⇒ 없음(7.075)
성별	남자(8.441) ⇒ 여자(6.167)
월 수입	300~500만원(13.000) ⇒ 200~300만원(8.667) ⇒ 없음(7.682) ⇒ 100만원 이하(7.500) ⇒ 100~200만원(6.706)
건강 상태	중증(13.000) ⇒ 양호(7.500) = 경증(7.500)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부	해당(8.973) ⇒ 아님(6.925)
제37조 후단 전과 유무	없음(8.137) ⇒ 있음(5.333)
단순 수작업	있음(9.467) ⇒ 없음(7.559)
전문가 위탁	없음(8.909) ⇒ 있음(7.171)
이종 전과의 수	상관계수 0.227

⁵⁾ 초범의 평균형량이 더 높음

⁶⁾ 이종전과가 없는 경우가 평균형량이 더 높음

⁷⁾ 이종전과의 수가 많으면 형량이 낮게 나타남

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의 평균형량이 더 높음 ⇒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을 염두에 둔 양형이라고 볼 수 있 은

⁹⁾ 컴퓨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가 더 높음 \Rightarrow 컴퓨터 사용을 한 사례에 실형선고가 많은지를 분석할 필요

¹⁰⁾ 문서의 수가 많으면 형량이 높게 나타남

- 단순 수작업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더 높은 형량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움(위와 같은 조사항목이 다수선택 가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됨)
- 또한 전문가 위탁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더 높은 형량을 보이는 데 이것 역시 파악하기 곤란
- 실형건수가 집행유예 건수보다 적어 통계분석상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확인 필요

○ 양형기준 초안에의 반영 검토

- 양형기준 초안은 "전문 위조범, 알선책 등에게 위탁한 경우"를 일반가중 인자로 설정하고 있으나, 위 통계자료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위 통계자료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위조의 고의로 전문 위조범이 위조하도록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지를 확인이 필요함

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 분석대상

실형 여부	피고인의 수 (명)	평균 형량 (월)
실형	11	11.091
집행유예	91	7.978
합계	102	8.314

○ 통계분석상 유의미한 양형인자

유의미한 양형인자	형량의 순서 (형량/단위 : 월) 또는 상관계수
피고인 월 수입	200~300만원(13.333) ⇒ 300~500만원(9.000) ⇒ 없 음(8.606) ⇒ 100~200만원(8.000) ⇒ 100만원 이하 (7.931)
자백 여부	일부부인(11.000) ⇒ 전부부인(8.800) ⇒ 전부자백 (8.110)

유의미한 양형인자	형량의 순서 (형량/단위 : 월) 또는 상관계수
단순 수작업	없음(8.808) ⇒ 있음(7.787)
공범의 수	상관계수 0.232
동종 전과의 수	상관계수 0.504
이종 전과의 수	상관계수 0.192

- 단순 수작업¹¹⁾의 방식으로 범행을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형량 이 낮게 나타남
- 공범의 수가 많을수록, 전과의 수가 많을수록 형량이 높아짐
- 자백여부는 일부부인하는 경우가 전부부인하는 경우보다 형량이 높은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고려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바.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

○ 분석대상

실형 여부	피고인의 수 (명)	평균 형량 (월)
실형	21	11.238
집행유예	234	7.778
합계	255	8.063

○ 통계분석상 유의미한 양형인자

- 밀입국 목적의 범죄가 형량이 높고, 공범이 수가 많으면 형량이 높음
- 전과는 많을수록 형량이 높음
- 가족의 관심이 높은 경우가 오히려 형량이 높게 나타나는데, 지능범에 해당하는 위조범의 경우에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으로 보임

○ 양형기준에의 반영 검토

¹¹⁾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서 단순 수작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함

유의미한 양형인자	형량의 순서 (형량/단위 : 월) 또는 상관계수
가족의 관심	높음(14.000) ⇒ 낮음 (8.167) ⇒ 보통(7.875)
초범 여부	초범 아님(8.421) ⇒ 초범 (7.739)
이종 전과 여부	있음 (8.509) ⇒ 없음(7.725)
이종 전과의 수	상관계수 0.225
밀입국 목적 여부	있음 (8.754) ⇒ 없음(7.846)
공범의 수	상관계수 0.333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수	상관계수 0.392

- "밀입국 목적의 경우"(위장결혼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불실기재 사례) 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형량이 높게 나타남
- 일반가중인자로 포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문서위조 자체가 불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양형기준 초안의 제2유형(수정안의 제1유형)은 불법목적 위조행위라고 유형정의를 내린 상태이고, 단순목적 등을 특별감경인자로 예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목적의 특정한 예시를 별도의 일반가중인자로 설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죄

○ 분석 대상

실형 여부	피고인의 수 (명)	평균 형량 (월)
실형	1	18.000
집행유예	28	7.214
합계	29	7.586

역 실형건수가 1건 밖에 안되어 실형을 전제로 형량에 미치는 양형인자의 영향력을 파악하기는 곤란

○ 통계분석상 유의미한 양형인자

- 대상문서의 개수가 형량과 상관관계를 가짐

○ 양형기준 초안에의 반영

유의미한 양형인자	형량의 순서 (형량/단위 : 월) 또는 상관계수
부양 가족	있음(8.750) ⇒ 없음(6.615)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수	상관계수 0.751
대상 문서의 갯수	상관계수 0.879

- 대상문서의 개수가 복수이면 경합범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가 능성이 많음
- "다량의 문서 작성"은 경합범이 아닌 범죄 중에서 대상문서의 매수가 큰 경우를 상정하여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함

아. 허위공문서 작성죄

○ 분석대상

실형 여부	피고인의 수 (명)	평균 형량 (월)
 실형	1	12.000
집행유예	4	9.000
합계	5	9.600

○ 통계분석

- 표본수가 너무 적어 통계분석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자. 공문서부정행사

○ 분석대상

실형 여부	피고인의 수 (명)	평균 형량 (월)
 실형	3	5.333
집행유예	11	7.273
합계	14	6.857

의 실형의 평균형량이 집행유예보다 낮은 현상을 보이고, 실형건수도 적어 유의미한 통계라고 보기 어려움

○ 통계분석상 유의미한 양형인자

유의미한 양형인자	형량의 순서 (형량/단위 : 월) 또는 상관계수
문서 등의 종류	기타(9.333) ⇒ 일반문서(6.000)

차. 형량에 대한 회귀분석

죄명	양형인자	베타계수
	변호인 선임 유무 및 종류	-0.152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부	0.145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부	0.120
공문서위조	신분, 경력, 재산 등 위장	0.101
	경제적 이득 취득	0.185
	컴퓨터 사용	-0.105
	명의자의 수	0.140
	변호인 선임 유무 및 종류	0.724
공문서변조	동종 전과 유무	-1.058
	이종 전과 유무	0.709
	이종 전과 유무	0.322
위조공문서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부	0.274
행사	단순 수작업	0.310
	컴퓨터 사용	0.257
	변호인 선임 유무 및 종류	0.875
	초범 여부	0.433
	제37조 전단 경합범 갯수	0.633
공전자기록 부사기제	다른 범죄 수단으로 사용	0.567
불실기재	밀입국	-1.048
	단순 수작업	-1.274
	전문가 위탁	-0.914

죄명	양형인자	베타계수
	명의자 수	-0.376
	초범 여부	0.750
	이종 전과 유무	0.718
공정증서원본	제37조 전단 경합범 갯수	0.501
불실기재	공범의 수	0.218
	범행계획	-0.188
	다른 범죄 수단으로 사용	-0.152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제37조 전단 경합범 개수	0.914
행사죄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범죄 이외 다른 행위의 수단으로 사용	0.756
불실기재		

2. 양형인자 추출

가. 개요

- 위와 같은 통계자료를 기초로 양형인자표에 설정한 양형인자를 추출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음
- 양형자료조사시에 양형인자는 조사가능한 양형인자를 망라적으로 기재하 였으므로 중복적인 사항이 다수 있고, 특별양형인자는 그 개수만으로 권 고영역을 설정하게 되므로 범죄의 수단, 범행의 결과, 범죄의 동기, 특히 참작할 사항 등으로 항목별 구분을 적절하게 배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1기 양형기준표의 양형인자와의 전체적 조화 내지 통일성을 유지 할 필요도 있음
- 따라서 위와 같은 통계분석결과를 기초로 설정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 에는 부적절하므로, 유사한 양형인자를 그룹핑함

나. 공문서 위조·변조 등의 경우

- 1) 특별양형인자
- 통계분석에 따른 경험적 수치에 의한 특별양형인자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변조한 경우(문서의 수, 명의자의 수),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경제적 이득 취득), 위조·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위조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공범의 수), 동종누범(동종전과), 심신미약(정신장애)
- 양형실무의 반영 내지 규범적 관점에 의한 특별양형인자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농아자, 자수
 - 2) 일반양형인자
- 통계분석에 따른 경험적 수치에 의한 일반양형인자

- 전문 위조범, 알선책에게 의뢰한 경우(전문가 위탁), 전문 위조장비(칼라 프린트,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단순 수작업, 컴퓨터 사용, 복사기 사용),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이종실형전과(이종전과 수), 공정증서원 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경우
- 양형실무의 반영 내지 규범적 관점에 의한 일반양형인자
 - 소극가담, 생계유지를 위한 범행, 변조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 여권 위조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문서(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국외 추방이 예상되는 경우, 진지한 반성

다. 허위공문서 작성 변개 등의 경우

- 1) 특별양형인자
- 양형실무의 반영 내지 규범적 관점에 의한 특별양형인자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경제적 이득취득),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5년 이내 동종 범행 또는 징계전력, 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회복의 방해
 - 2) 일반양형인자
- 양형실무의 반영 내지 규범적 관점에 의한 일반양형인자
 - 소극가담,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경우(표창 수상 등 고려)

라. 공문서 부정행사의 경우

- 1) 특별양형인자
- 양형실무의 반영 내지 규범적 관점에 의한 특별양형인자
 - 생계유지를 위한 의도, 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동종누범

- 2) 일반양형인자
- 통계분석에 따른 경험적 수치에 의한 일반양형인자
 - 공무원의 자격 사칭(공문서의 종류)
- 양형실무의 반영 내지 규범적 관점에 의한 일반양형인자
 - 범죄 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부정행사한 공문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별도 범죄가 되는 경우 제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국외 추방이 예상되는 경우, 이종부범

3. 양형인자 정리

가. 공문서 위조·변조 등의 경우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 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상이자		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2유형)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
	행위자 <i> </i>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누범(사문서 위·변조 등 포 함)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소극가담 ○ 변조부분이 문서전체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경우	() 반결분, 여권 위·면소 등 사회 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 시(다마 범죄로 이하여 주대
	행위자 <i> </i>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 는 동종전과(사문서범죄 포함)

[양형인자의 정의]

-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

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 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범행동기가 단순한 호기심 또는 과시 목적인 경우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경미한 불법적 이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 나.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 지 못한 경우
 - 범행을 통해 의도한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궁극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위·변조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조직적 범죄에 있어서 조직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실질적인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기술자, 조직의 하부 실무자 내지 조직책이 아닌 조직의 중간 간부급 이상의 알선·전달 담당 책임자
- 라.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거나, 대규모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질서를 교란하여 그 폐해가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

마. 소극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함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 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함
- 바. 변조부분이 문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이 아닌 변조행위(예 : 단순한 날짜 변조 - 단, 이 경우에도 권리의 소멸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
- 사.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피고인은 전문 위·변조범 내지 위·변조단의 구성원이 아니나, 전 문적인 위·변조범 내지 알선책 등 위·변조단의 구성원에게 의뢰 하여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예를 들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변조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위·변조를 의뢰하거나 위·변조단 의 알선책 등을 통해 위·변조를 의뢰한 경우)
- 아. 판결문, 여권 위·변조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다 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 위·변조의 대상이 된 문서가 판결문, 여권, 중요지위에 관한 신 분증명서, 특허증, 인감증명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중 요한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경우(다만, 위· 변조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큰 경우에 해당하면 따로 일 반양형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

나.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등의 경우

Ī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인하여 얻 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 우	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행위자 <i> </i> 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5년 이내 동종(사문서범죄 포함)의 전과 또는 징계전력 ○ 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회복의 방해
일반	행위	○ 소극가담	
_{양형} 인자	행위자 <i> </i> 기타	○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경우(표창 수상 등 고려)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전과(사문서범죄 포함)

[양형인자의 정의]

- 가.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 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 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종전의 담당자, 주위의 유사업무 담당자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온 공무수행방식을 만연히 따른 경우
 - 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나.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

○ 외부 범죄조직의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여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등을 저지른 경우를 의미

다.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수사기밀의 누설로 인하여 심각한 수사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경우
- 무고한 사람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허위공문서로 인하여 행정조치나 인허가가 이루어져 그로 인한 상당한 폐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공문서등 부정행사의 경우

구분 감경요소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행위 ○생계 유지를 위한 의도		○ 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경미하지 않은 불법적 이득일 것) ○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인자 행위자 이 심선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행위	범죄 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인자	행위자 <i> </i> 기타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국외추방이 예상되는 경우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 종전과(사문서범죄 포함)

[양형인자의 정의]

- 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
 - 공문서등 부정행사를 통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함으로써 공 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의미함(별도로 다수범죄 처 리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나. 부정행사한 공문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별도 범죄가 되는 경우 제외)
 - 부정행사의 대상이 되는 공문서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경 우 중 취득행위가 별도의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친족상도 례, 피해자의 불특정 등)

[덧붙임] 공문서 관련 양형인자 통계분석

1. 상관관계 분석결과

가. 공문서 변조

1) 피고인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단위: F	P
	남자	30	7.600	2.1270		
성별	여자	8	6.500	2.0702	1.306	0.200
	30세미만	5	8.800	1.7889		
	40세미만	10	7.400	2.1187	†	
	50세미만	12	6.833	1.8007	1	
피고인 연령	60세미만	6	7.333	3.5024	0.669	0.650
	70세미만	3	6.667	1.1547	†	
	70세이상	2	8.000	0.0000	1	
	초등학교	5	8.400	0.8944		
	중학교	7	9.429	2.2254	† 	
학력	고등학교	11	6.364	1.7477	3.582	0.018
	대학교	6	7.333	1.6330	*	
	대학원	3	6.667	2.3094		
	무직	10	7.600	1.2649	-	
	기업 대표이사	2	6.000	0.0000		
	기업체 임원	1	4.000			
	회사원	4	8.000	2.3094		
	자영업(점포업자 등)	5	8.000	2.8284		
직업	기타 전문직	1	8.000		1.001	0.469
	주부	2	5.000	1.4142		
	공원	1	8.000	•		
	일용직	6	8.667	2.4221		
	종업원	1	8.000			
	기타	3	6.000	3.4641		
주거	주거부정	3	9.333	1.1547	1 677	0.104
1 / 1	주거일정	28	7.143	2.2063	1.077	0.104
27.2.43	없음	6	7.667	1.5055	<u> </u>	
월수입	100만원 이하	10	7.800	2.2010	1.129	0.376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명, 월 P
0021	200만원 이하	7	8.286	2.4300		
	300만원 이하	3	6.000	2.0000		
	400만원 이하	3	6.667	1.1547		
	500만원 이하	1	4.000	1.1047		
	1000만원 초과	1	6.000	•		
피고인 재산	없음	11	8.909	2.0715	3.515	
의고인 재산 유무	있음	19	6.526	1.6114	3.313	0.002
11 1	 1천만원 이하	4	7.000	1.1547	7, 7,	
	1선인권 이야 5천만원 이하				1	
	5선단원 이야 1억원 이하	7	6.000	1.6330	-	
피고인 재산		1	10.000	1 (000	1.451	0.271
	3억원 이하	4	6.000	1.6330		
	5억원 이하	1	6.000		-	
	5억원 초과	2	7.000	1.4142		
혼인관계	미혼	4	9.000	1.1547	2.395	0.132
	기혼(사실혼 포함)	30	7.200	2.2652		
부양가족	없음	4	8.000	1.6330	0.738	0.467
	있음	27	7.111	2.3094		
건강상태	양호	31	7.613	2.0278	$\frac{1}{1.228}$	0.276
	경증	2	6.000	0.0000		
	높음	3	6.667	1.1547		
가족의 관심	보통	7	7.143	1.9518	0.217	0.809
	낮음	1	6.000			
사회적	높음	1	6.000		0 333	0.667
유대관계	보통	2	7.000	1.4142	0.000	0.007
장애인 여부	불해당	36	7.444	2.1705	3.993	0.359
이게면 기가	해당	2	6.000	0.0000	***	0.009

2) 전과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초범 여부	아님	17	6.588	2.3200	-2.1	0.041
조집 역구	해당	21	8.000	1.7889	19*	0.041
도조 리코 ㅇㅁ	없음	37	7.514	1.9667		
동종 전과 유무	있음	1	2.000			•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이종전과유무	없음	21	8.000	1.7889	2.119	0.041
ा <u>च्यम</u> मम	있음	17	6.588	2.3200	*	0.041
	6월 이하	2	6.000	0.0000		
	1년 이하	1	4.000			
시조기기	2년 이하	4	8.500	2.5166		
이종전과 재범기간	3년 이하	2	8.000	2.8284	1.125	0.419
세함기신	4년 이하	2	7.000	1.4142		
	5년 이하	1	6.000			
	5년 초과	4	5.000	2.5820		
집행유예 중	아님	35	7.657	1.9088	3.176	0.003
여부	해당	3	4.000	2.0000	**	0.003
제37조 전단	아님	10	7.800	1.9889	0.740	0.464
경합범 여부	해당	28	7.214	2.2003	0.740	0.464
제37조 후단	없음	35	7.600	1.9281	2.429	0.020
전과 유무	있음	3	4.667	3.0551	*	0.020

3) 공범 및 범행 후 정황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ਰੂਪੀ ਨੀ ਮੋ	단독범	22	7.545	2.5397	0.504	0.556
공범 여부	공범	16	7.125	1.4549	0.594	0.556
자백 여부	전부자백	34	7.235	2.1470	9.744	0.107
사학 역구 	일부자백	3	9.333	1.1547	2.744	0.107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4) 범행계획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범행계획	우발적	1	8.000			
범행계획	계획적	37	7.351	2.1630	•	•

 $p < 0.05 \rightarrow^*, \quad p < 0.01 \rightarrow^{**}, \quad p < 0.001 \rightarrow^{***}$

5) 범행동기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다른 범죄	없음	34	7.529	2.1495	1.370	0.179
수단으로 사용	있음	4	6.000	1.6330	1.570	0.179
범죄 이외 다른	없음	30	7.467	2.3450		
행위의 수단으로 사용	있음	8	7.000	1.0690	0.544	0.590
	A) O	1.0	7.000	1 7705		
신분, 경력,	없음	19	7.368	1.7705	0.000	1.000
재산 등 위장	있음	19	7.368	2.4991	0.000	1.000
밀입국	없음	37	7.405	2.1533		
包括书	있음	1	6.000		•	•
경제적 이득	없음	29	7.103	2.1103	1 200	0.172
취득	있음	9	8.222	2.1082	-1.390	0.173

6) 범행방법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단순 수작업	없음	19	6.947	1.8097	1 517	0.120
인단 구석됩 	있음	17	8.000	2.3452	-1.517	0.139
복사기 사용	없음	27	7.556	2.3094	0.540	0.502
국사기 사용	있음	9	7.111	1.4530		0.593
컴퓨터 사용	없음	32	7.688	1.9746	2.024*	0.050
집까디 사용	있음	4	5.500	2.5166	2.034*	0.050
기미기 이디	없음	30	7.400	2.2376	0.979	0.792
전문가 위탁	있음	6	7.667	1.5055	-0.278	0.783

 $p < 0.05 \rightarrow^*, \quad p < 0.01 \rightarrow^{**}, \quad p < 0.001 \rightarrow^{***}$

7) 객관적 인자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문서등의 종류	일반문서	36	7.278	2.0370	1.240	0 979
[단시당의 중표	기타	2	9.000	4.2426	1.240	0.273
	주민등록증(주민등록	2	8.000	0.0000		
	표 등·초본 포함)	2	0.000	0.0000		
공문서의 종류	인감증명서	1	8.000	•	1.996	0.134
	학업관련증명서	4	5.000	2.0000		
	기타	29	7.448	1.9926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사문서의 종류	계약서	2	8.000	0.0000	0.250	0.667
사군시의 중규 	기타	2	6.000	5.6569	0.230	0.007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8) 피해자 특성 및 피해회복

단위: 명,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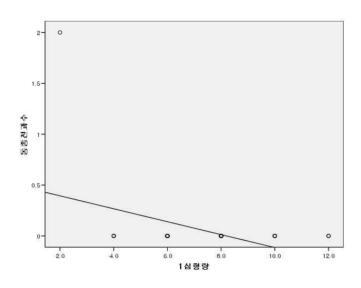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피고인과의	아는 사람	1	8.000	•		
	모르는 사람	1	6.000			
전계	기타	1	10.000			

 $p < 0.05 \rightarrow^*, \quad p < 0.01 \rightarrow^{**}, \quad p < 0.001 \rightarrow^{***}$

9) 연속형 변수에 대한 형량의 상관분석

양형인자	인자 평균	인자 표준편차	상관계수
		4,,	(피고인수)
동종 전과 수	0.05	0.324	-0.419(38)**
이종 전과 수	2.08	3.225	-0.142(38)
제37조 전단 경합범 개수	2.92	8.001	0.079(38)
공범의 수	0.58	0.793	-0.002(38)
명의자 수	0.93	0.258	-0.094(15)
위·변조 등 문서 개수	3.90	8.478	0.763(10)*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나. 공문서 부정행사

1) 피고인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Р
	초등학교	1	4.000			
학력	중학교	4	6.000	2.8284	2 400	0.134
의 역 	고등학교	5	8.800	1.0954	2.499	0.134
	대학교	2	7.000	1.4142		
	30세미만	1	10.000			
피고인 연령	40세미만	4	8.000	1.6330	2.362	0.133
기고인 선생	50세미만	5	6.800	2.2804	2.302	0.133
	60세미만	4	5.000	2.0000		
	무직	2	4.000	0.0000		
	회사원	5	8.000	1.4142		
직업	자영업(점포업자 등)	4	6.000	2.8284	1.671	0.240
	농업·어업·임업·축산업	2	8.000	2.8284		
	종업원	1	8.000			
주거	주거부정	2	5.000	1.4142	-1.266	0.237
一 	주거일정	9	7.333	2.4495	1-1.200	0.237
	없음	1	4.000	•		
월수입	100만원 이하	2	7.000	1.4142	0.925	0.455
	200만원 이하	5	7.600	2.6077		
피고인 재산	없음	4	7.500	3.0000	0.171	0.869
유무	있음	5	7.200	2.2804	0.171	0.009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1천만원 이하	1	8.000			
피고인 재산	5천만원 이하	3	8.000	2.0000	1.600	0.385
	1억원 이하	1	4.000			
	미혼	1	10.000	•		
혼인관계	기혼(사실혼 포함)	7	7.429	2.2254	0.590	0.584
	별거(가출)	1	8.000	•		
부양가족	없음	3	6.000	3.4641	-0.905	0.389
T 8/15	있음	8	7.500	2.0702	0.905	0.369
건강상태	양호	9	7.111	2.2608	1.225	0.297
신경경네	경증	2	9.000	1.4142	1.223	0.297
기세시시	불해당	13	6.769	2.3859		
장애인 여부	해당	1	8.000			•

2) 전과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초범 여부	아님	12	6.833	2.1672	-0.091	0.929
조금 역구	해당	2	7.000	4.2426	0.091	0.929
동종 전과 유무	없음	9	7.333	2.4495	1 025	0.321
5 6 전략 개부	있음	5	6.000	2.0000	1.035	0.321
동종 전과	1년 이하	1	8.000		1.364	0.227
재범기간	5년 초과	4	5.500	1.9149	1.304	0.327
시조 거기 ㅇㅁ	없음	3	7.333	3.0551	0.200	0.704
이종 전과 유무	있음	11	6.727	2.2401	0.388	
	6월 이하	3	7.333	3.0551		
	1년 이하	1	6.000		7	
이종 전과	2년 이하	1	6.000		0.000	
재범기간	4년 이하	1	10.000		0.886	0.579
	5년 이하	1	6.000			
	5년 초과	2	4.000	0.0000		
집행유예 중	아님	13	6.923	2.3966		
여부	해당	1	6.000		·	•
제37조 전단	아님	11	6.364	2.1574	1 610	0.101
경합범 여부	해당	3	8.667	2.3094	-1.619	0.131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 ·	_			1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3) 공범 및 범행 후 정황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고버 서브	단독범	12	6.500	2.2764	_1 476	0.166
공범 여부	공범	2	9.000	1.4142	-1.470	0.100
반성 여부	없음	1	4.000			
	있음	6	8.667	1.6330		•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4) 범행계획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범행계획	우발적	2	5.000	1.4142	_1 156	0.979
함생계획	계획적	11	7.091	2.4271	-1.156	0.272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5) 범행동기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다른 범죄	없음	13	6.769	2.3859		
수단으로 사용	있음	1	8.000		•	
범죄 이외 다른	없음	10	6.200	2.2010		
행위의 수단으로 사용	있음	4	8.500	1.9149	-1.823	0.093
신분, 경력, 재산	없음	3	8.667	1.1547	1 (10	0.101
등 위장	있음	11	6.364	2.3355	1.619	0.131

 $p<0.05 \, \rightarrow^*, \quad p<0.01 \, \rightarrow^{**}, \quad p<0.001 \, \rightarrow^{***}$

6) 객관적 인자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문서 등의종류	일반문서	10	6.000	2.1082	6.611*	0.026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기타	3	9.333	1.1547		
공문서의 종류	주민등록증(주민등록 표 등·초본 포함)	6	6.000	2.1909	1.175	0.302
	운전면허증	7	7.429	2.5071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7) 피해자 특성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형제자매	1	10.000	•		
	친구	1	10.000	•		
피고인과의 관계	아는 사람	2	5.000	1.4142	4.500	0.338
	모르는 사람	1	8.000	•		
	기타	1	4.000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8) 연속형 변수에 대한 형량의 상관분석

양형인자	인자 평균	인자 표준편차	상관계수 (피고인수)
동종 전과 수	0.33	0.671	-0.078(14)
이종 전과 수	5.90	5.567	-0.272(14)
제37조 전단 경합범 개수	2.17	17.552	0.392(14)
공범의 수	0.08	0.402	0.264(14)
명의자 수	1.03	0.173	. (9)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다. 공문서 위조

1) 피고인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성별	남자	478	8.701	3.5164	3.251**	0.001
	여자	164	7.921	2.2808	3.231**	0.001
학력	무학	6	8.333	1.5055	1.561	0.169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초등학교	66	8.636	2.8750		
	중학교	163	8.650	2.8165		
	고등학교	176	8.710	4.1323		
	대학교	120	7.742	2.5354		
	대학원	7	8.000	2.3094		
	20세미만	3	9.333	2.3094		
	30세미만	112	7.830	2.6607		
피고인 연령	40세미만	212	8.453	3.3645		
	50세미만	208	8.760	3.3765	2.102	0.051
	60세미만	85	8.541	2.6617		
	70세미만	18	10.278	5.6548		
	70세이상	4	7.000	1.1547		
	무직	209	8.311	3.1689		
	기업 대표이사	6	8.333	2.6583		
	기업체 임원	3	6.667	1.1547		
	회사원	65	7.077	2.9544		
	자영업(점포업자 등)	94	9.106	4.3932		
	교육직(교사·강사 등)	7	6.000	1.1547		
	기타 전문직	10	9.400	5.9666		
	농업·어업·임업·축산업	6	8.000	1.7889		
직업	군인	2	9.000	4.2426	1 694	0.051
식업	기타 공무원	1	8.000		1.634	0.051
	학생	7	9.714	4.5356		
	주부	5	8.000	3.1623		
	공원	8	8.750	2.1213		
	운전사	8	9.000	4.1404		
	일용직	140	8.971	2.3687		
	종업원	50	8.700	3.2341		
	종교인	1	6.000			
	기타	15	8.667	1.9518		
スコ	주거부정	44	9.545	3.2239	9 174	0.020
주거 -	주거일정	473	8.423	3.2805	2.174*	0.030
이스이	없음	153	8.882	3.8473		
	100만원 이하	84	8.488	3.2431	0.000	0.404
월수입	200만원 이하	143	8.266	2.7704	0.928	0.484
	300만원 이하	46	8.326	3.2527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400만원 이하	7	7.143	1.9518		
	500만원 이하	3	9.333	3.0551		
	1000만원 이하	2	5.000	1.4142		
	1000만원 초과	1	8.000			
되그이 케시	없음	284	8.884	3.6995	9 4 9 4 s	0.013
피고인 재산	있음	170	8.124	2.7803	2.484*	0.013
	1천만원 이하	54	8.444	2.3844		
	5천만원 이하	51	7.647	2.1801		
	1억원 이하	19	8.947	3.3578		
피고인 재산	3억원 이하	20	7.950	4.3100	0.830	0.548
	5억원 이하	1	10.000			
	5억원 초과	6	7.333	2.7325		
	금액 확인불가	18	7.889	2.7842		
	미혼	134	8.239	3.4427		
	기혼(사실혼 포함)	292	8.654	3.0314		
	이혼	79	8.595	3.2759	0.001	0.050
혼인관계	사별	7	8.857	1.9518	0.631	0.676
	동거	5	6.800	2.2804		
	별거(가출)	10	8.200	5.7697		
리키 버리(카스)	없음	244	8.459	2.8187	0.145	0.005
가정 불화(결손)	있음	86	8.512	3.1277	-0.145	0.885
H Alal Z	없음	140	8.879	3.7827	1 401	0.100
부양가족	있음	387	8.401	3.0679	1.481	0.139
	양호	483	8.495	3.2262		
건강상태	중증	10	10.000	3.8873	1.470	0.231
	경증	49	9.000	3.9686		
Head	동거	26	8.000	2.7129		
부모와	이혼	14	9.286	3.3839	1.074	0.350
동거 여부	사별	10	8.800	1.3984		
	높음	35	10.000	4.9468		
가족의 관심	보통	171	8.433	2.5986	4.051*	0.019
	낮음	34	9.559	4.7302		
	높음	7	10.286	3.9036		
사회적 유대관계	보통	86	8.674	2.4660	1.158	0.318
	낮음	13	9.385	5.1241		
장애인 여부	불해당	634	8.492	3.2525	-0.653	0.514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해당	8	9.250	4.1318		
	없음	635	8.488	3.2163	0.500	0.624
마약복용 경력	있음	7	9.714	6.4734	-0.500	0.634
정신병력	없음	641	8.499	3.2640		
	있음	1	10.000		•	•

2) 전과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초범 여부	아님	255	8.765	4.1164	1 514	0.121
소립 역구	해당	387	8.328	2.5385	1.514	0.131
동종 전과 유무	없음	597	8.412	3.0856	-1.706	0.095
중중 신작 ㅠㅜ	있음	45	9.689	4.9489	-1.706	0.095
	6월 이하	7	9.714	4.2314		
동종 전과 재범기간	1년 이하	8	8.750	3.5355		
	2년 이하	8	9.500	1.7728		
	3년 이하	2	8.000	0.0000	0.639	0.698
	4년 이하	1	8.000			
	5년 이하	3	5.667	1.5275		
	5년 초과	13	11.462	7.8381		
이종 전과 유무	없음	393	8.333	2.5301	1 400	0.139
이중 신과 ㅠㅜ	있음	249	8.767	4.1555	-1.482	
	6월 이하	41	8.024	3.8632		
	1년 이하	29	8.103	3.1207		
시즈 기기	2년 이하	35	9.429	4.6164		
이종 전과 재범기간	3년 이하	22	9.818	6.1384	1.384	0.222
제됩기신	4년 이하	24	7.958	2.6454		
	5년 이하	11	6.818	3.1247		
	5년 초과	85	8.953	3.7414		
느버 저게 선보	없음	624	8.438	3.0411	_0 005	0.389
누범 전과 여부	있음	17	9.941	6.9863	-0.885	0.369
출소 후	6월 이하	1	24.000		1.704	0.100
재범 전과	1년 이하	5	10.800	7.9498	1.764	0.196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2년 이하	5	7.600	0.8944		
	3년 이하	6	8.833	7.6004		
	4년 이하	1	2.000			
집행유예 중	아님	623	8.523	3.2760	0.066	0.334
여부	해당	19	7.789	2.7402	0.966	0.334
형 집행정지 중	아님	641	8.496	3.2616		
여부	해당	1	12.000		•	•
제37조 전단	아님	326	7.917	2.6630	-4.662	0.000
경합범 여부	해당	316	9.104	3.6902	***	0.000
제37조 후단	없음	620	8.556	3.2318	2.271*	0.023
전과 유무	있음	22	6.955	3.7857	2.2/1*	0.023

3) 공범 및 범행 후 정황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공범 여부	단독범	57	8.263	2.5251	-0.578	0.564
6 급 역구	공범	585	8.525	3.3259	0.576	0.504
기스 기비 시비	없음	498	8.438	3.1465	-1.534	0.126
자수·자복 여부	있음	17	9.647	4.4853	-1.554	0.120
	전부자백	548	8.471	3.2174		
자백 여부	일부자백	17	8.471	4.8234	0.589	0.555
	전부부인	14	9.429	2.6520		
반성 여부	없음	13	8.923	3.4269	0.572	0.567
	있음	369	8.472	2.7702	0.573	0.567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4) 범행계획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범행계획	우발적	4	6.500	1.0000	_1 929	0.210
	계획적	638	8.514	3.2676	-1.232	0.219

 $p < 0.05 \rightarrow^*, \quad p < 0.01 \rightarrow^{**}, \quad p < 0.001 \rightarrow^{***}$

5) 범행동기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다른 범죄	없음	559	8.472	3.2121	-0.500	0.560
수단으로 사용	있음	80	8.700	3.6436	-0.583	0.000
범죄 이외 다른	없음	571	8.581	3.3469		
행위의 수단으로 사용	있음	68	7.824	2.4123	1.812	0.071
물품구입	없음	637	8.496	3.2692	-0.650	0.516
五五十月	있음	2	10.000	2.8284	-0.650	
신분, 경력, 재산	없음	339	8.634	3.7046	1 110	0.264
등 위장	있음	300	8.350	2.6867	1.119	
п) ој —	없음	555	8.497	3.3606	0.000	0.045
밀입국	있음	84	8.524	2.5811	-0.069	0.945
경제적 이득	없음	538	8.165	2.7280	-4.206	0.000
취득	있음	101	10.287	4.9302	***	0.000
특별한 동기	없음	633	8.509	3.2477	0.000	0.520
없음	있음	6	7.667	5.2789	0.628	0.530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6) 범행방법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단순 수작업	없음	569	8.413	3.2447	-1.775	0.076
1 2T 741	있음	71	9.141	3.3649	-1.775	0.076
보기기 기요	없음	626	8.511	3.2864	0.002	0.267
복사기 사용	있음	14	7.714	1.8985	0.903	0.367
전문적 인쇄기	없음	634	8.454	3.2112	-3.169	0.002
사용	있음	6	12.667	5.8878	**	0.002
커프리 1) Q	없음	537	8.587	3.2502	1 645	0.100
컴퓨터 사용	있음	103	8.010	3.3062	1.645	0.100
전문가 위탁	없음	173	8.653	3.5513	0.759	0.459
	있음	467	8.435	3.1523	0.752	0.452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7) 객관적 인자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일반문서	576	8.313	3.0809		
문서 등의 종류	전자기록 등	1	8.000		6.668	0.001
	특수매체기록			•	**	0.001
	기타	48	10.083	4.6851		
	주민등록증(주민등록	241	9.050	3.7167		
	표 등·초본 포함)					
코타시시 조르	운전면허증	54	7.815	2.8088	8.511*	0.000
공문서의 종류	인감증명서	4	7.500	3.0000	**	
	학업관련증명서	59	6.475	2.3220		
	기타	278	8.622	2.9333		
공정증서원본의	가족관계등록부	3	9.333	1.1547	0.074	0.788
종류	기타	18	9.778	2.7344	0.074	0.700
	차용증(대출신청서 포함)	1	6.000			
	외국 공문서	4	7.500	1.0000		
	계약서	4	9.500	3.0000		
사문서의 종류	휴대폰가입신청서	2	5.000	1.4142	2.958*	0.022
	재직 증명서	9	6.889	1.0541		
	학위 증명서	5	6.800	1.0954		
	기타	12	9.333	2.6054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8) 피해자 특성 및 피해 회복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직계존속	1	10.000			
	형제자매	1	6.000			
	기타 친인척	3	6.000	2.0000		
	친구	3	6.000	2.0000	1.560	
피고인과의 관계	직장관계	1	6.000		1.562	0.145
	거래처관계	1	6.000			
	채권채무관계	1	6.000			
	아는 사람	5	6.800	1.78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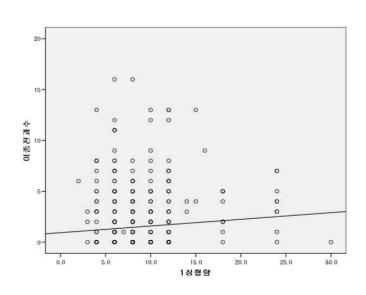
단위: 명,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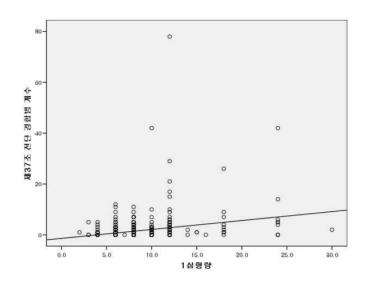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Р
	모르는 사람	55	9.927	4.0727		
	기타	6	6.667	1.0328		
합의 여부	전부 합의	1	8.000		0.012	0.010
	미합의	19	8.526	4.4643	0.013	0.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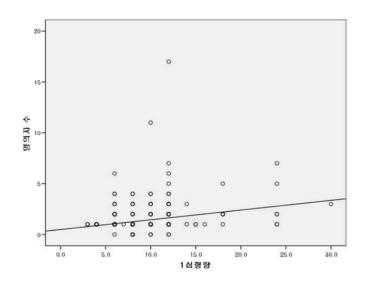
9) 연속형 변수에 대한 형량의 상관분석

양형인자	인자 평균	인자 표준편차	상관계수 (피고인수)
동종전과 수	0.13	0.701	0.050(642)
이종전과 수	1.47	2.623	0.081(642)*
제37조 전단 경합범 개수	1.58	4.594	0.248(642)***
공범의 수	1.81	1.554	0.099(639)*
명의자 수	1.29	1.175	0.263(477)***
위·변조 등 문서 개수	201.59	3,146.637	0.256(426)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라. 공전자기록불실기재

1) 피고인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서벼	남자	138	8.304	2.6461	1.671	0.096
성별	여자	117	7.778	2.3346	1.071	0.090
	30세미만	12	7.167	1.5859		
피고인 연령	40세미만	39	8.000	1.4510	0.387	0.857
, , ,	50세미만	118	8.102	2.6031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60세미만	76	8.211	2.8393		
	70세미만	8	7.750	2.9155		
	70세이상	2	8.000	5.6569		
	무학	6	8.333	2.3381		
	초등학교	52	8.615	3.5544		
학력	중학교	64	7.672	1.7553	1.170	0.325
	고등학교	87	8.011	2.3452		
	대학교	14	8.571	1.8277		
	무직	79	8.114	3.0042		
	회사원	7	8.286	1.3801		
	자영업(점포업자 등)	16	9.938	4.2343		
	기타 전문직	1	6.000			
	농업·어업·임업·축산업	3	6.000	2.0000		
직업	공원	10	8.000	1.3333	1.728	0.075
	운전사	21	8.095	1.9469		
	일용직	42	7.429	1.6101		
	종업원	45	7.644	1.4948		
	종교인	1	8.000			
	기타	24	8.667	2.8691		
スコ	주거부정	33	8.212	1.6911	0.014	0.001
주거	주거일정	157	8.108	2.6737	0.214	0.831
	없음	60	8.250	2.9494		
이스이	100만원 이하	82	7.671	1.7920	0.000	0.404
월수입	200만원 이하	49	7.837	1.8183	0.803	0.494
	300만원 이하	2	8.000	0.0000		
피고인	없음	140	7.957	2.3957	0.007	0.005
재산 유무	있음	44	7.955	1.9042	0.007	0.995
	1천만원 이하	22	8.273	1.9804		
되고이 제제	5천만원 이하	16	7.375	1.5864	1 000	0.000
피고인 재산	1억원 이하	3	7.333	2.3094	1.363	0.268
	3억원 이하	3	9.333	2.3094		
	미혼	35	8.343	2.4964		
	기혼(사실혼 포함)	76	8.079	2.3424		
혼인관계	이혼	71	7.859	2.4744	0.324	0.898
,	사별	10	7.800	1.4757		
	동거	4	8.500	2.5166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별거(가출)	2	7.000	1.4142		
가정 불화(결손)	없음	55	8.327	1.9537	1 170	0.245
[가장 출와(결근)] 	있음	57	7.842	2.4038	1.170	0.245
보아기조	없음	76	8.092	2.4341	0.400	0.630
부양가족	있음	114	7.930	2.1605	0.482	0.030
	양호	183	8.093	2.6264		
건강상태	중증	6	10.667	3.9328	3.003	0.052
	경증	42	8.000	2.0242		
нпо	동거	4	7.500	1.0000		
부모의 동거 여부	이혼	8	8.500	2.0702	0.598	0.563
중기 역구	사별	5	7.200	3.0332		
	높음	2	14.000	5.6569	10.663	0.000
가족의 관심	보통	56	7.875	1.7484		
	낮음	12	8.167	1.5859	***	
	높음	1	6.000			
사회적 유대관계	보통	26	7.423	1.7927	0.363	0.699
	낮음	1	8.000			
장애인 여부	불해당	246	8.073	2.5336	0.245	0.720
강애인 역구	해당	9	7.778	2.1082	0.345	0.730
마약복용 경력	없음	253	8.055	2.5113	0.500	0.500
마무국광 경역 	있음	2	9.000	4.2426	-0.528	0.598
정신병력	없음	254	8.071	2.5185		
(3건명의	있음	1	6.000			•

2) 전과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초범 여부	아님	121	8.421	3.0923	2.124*	0.035
조심 역구	해당	134	7.739	1.8020	2.124*	0.033
동종전과 유무	없음	250	8.048	2.4523	-0.505	0.648
중중신과 ㅠ구	있음	4	9.500	5.7446	-0.505	0.046
동종전과 재범기간	6월 이하	1	6.000	•		
	4년 이하	1	8.000	•		•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5년 이하	1	6.000			
	5년 초과	1	18.000			
이종전과 유무	없음	142	7.725	1.7631	-2.335	0.001
	있음	112	8.509	3.1878	*	0.021
이종전과	6월 이하	13	10.000	4.0000		
	1년 이하	12	8.167	3.5633		
	2년 이하	19	7.789	2.0971		
이동선과 재범기간	3년 이하	10	10.600	5.0816	1.837	0.099
세 합기신	4년 이하	12	7.417	2.1088		
	5년 이하	3	8.667	3.0551		
	5년 초과	42	8.095	2.6115		
누범 전과 여부	없음	247	7.992	2.2793	-0.944	0.415
구립 신과 역구 	있음	4	12.000	8.4853	-0.944	0.415
호 시 하	6월 이하	1	10.000		0.051	0.042
출소후 재범기간	3년 이하	3	12.667	10.2632	0.051	0.843
집행유예 중	아님	251	8.096	2.5042	1 426	0.159
여부	해당	3	6.000	3.4641	1.436	0.152
제37조 전단	아님	13	7.692	2.2871	0.544	0.597
경합범 여부	해당	242	8.083	2.5314	-0.544	0.587
제37조 후단	없음	246	8.106	2.5000	1 497	0.155
전과 유무	있음	9	6.889	2.8480	1.427	0.155

3) 공범 및 범행 후 정황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코비 시비	단독범	19	8.105	2.1575	0.076	0.939
공범 여부	공범	236	8.059	2.5476	0.070	0.939
자수·자복 여부	없음	244	8.057	2.5444	-0.581	0.561
	있음	6	8.667	2.0656	-0.561	0.561
	전부자백	234	8.060	2.5719		
자백 여부	일부자백	13	8.462	1.6641	0.787	0.456
	전부부인	5	6.800	1.7889		
반성 여부	없음	1	2.000			
	있음	172	8.203	2.5200	•	•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 = ;			_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4) 범행동기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다른 범죄	없음	215	7.981	2.1724	-0.989	0.328
수단으로 사용	있음	38	8.632	3.9485	-0.909	0.328
범죄 이외 다른	없음	234	8.051	2.5820		
행위의 수단으로 사용	있음	19	8.421	1.5747	-0.614	0.540
신분, 경력, 재산	없음	162	8.253	2.9347	1 797	0.004
등 위장	있음	91	7.769	1.4913	1.737	0.084
밀입국	없음	188	7.846	2.1749	-2.096	0.039
包括力	있음	65	8.754	3.2501	*	0.039
경제적 이득	없음	121	7.942	2.0829	_0.097	0.400
취득	있음	132	8.205	2.8653	-0.827	0.409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5) 범행방법

단위: 명, 월

						- /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단순 수작업	없음	123	8.033	2.1877	-0.154	0.878
	있음	121	8.083	2.8594		
컴퓨터 사용	없음	239	8.025	2.5320	-1.376	0.170
	있음	5	9.600	2.6077		
전문가 위탁	없음	203	8.059	2.6188	0.024	0.981
	있음	41	8.049	2.1207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6) 객관적 인자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문서 등의 종류	일반문서	28	8.500	2.6458	0.601	0.549
	전자기록 등	220	7.982	2.4791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특수매체기록					
	기타	4	8.500	2.5166		
공문서의 종류	주민등록증(주민등록	1	6.000			
	표 등·초본 포함)	1	0.000	•	0.520	0.475
	기타	44	7.591	2.1815		
고거즈되이비이	등기부	1	12.000			
공정증서원본의 조르	가족관계등록부	245	8.082	2.5353	1.319	0.269
종류	기타	2	9.000	1.4142]	
사문서의 종류	계약서	8	9.250	1.8323	0.414	0.541
	기타	1	8.000		0.414	0.541

7) 피해자 특성

단위: 명,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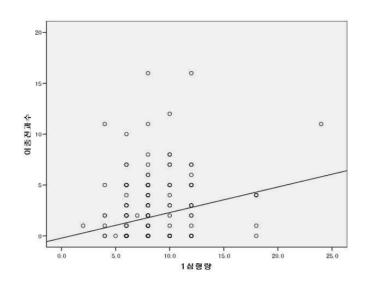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피고인과의 관계	배우자	1	8.000	•		
	아는 사람	2	9.000	1.4142	0.645	0 505
	모르는 사람	9	8.222	2.1082	0.645	0.595
	기타	12	7.500	1.2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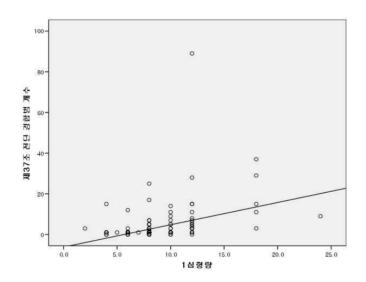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8) 연속형 변수에 대한 형량의 상관분석

양형인자	인자 평균	인자 표준편차	상관계수 (피고인수)
동종 전과 수	0.03	0.243	0.054(254)
이종 전과 수	1.88	2.789	0.225(254)***
제37조 전단 경합범 개수	2.51	6.677	0.392(255)***
공범의 수	2.71	4.091	0.333(253)***
명의자 수	0.37	0.496	-0.064(19)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 피고인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성별	남자	59	8.508	3.0079	1.001	0.320
(성 '글	여자	43	8.047	1.6029	1.001	0.320
	30세미만	3	7.333	1.1547		
 피고인 연령	40세미만	15	7.733	1.4864	0.752	0.587
기보인 단하	50세미만	55	8.473	2.9304	0.752	0.007
	60세미만	26	8.231	1.9861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Р
	70세미만	2	11.000	4.2426		
	70세이상	1	8.000			
	무학	2	7.000	1.4142		
	초등학교	26	8.154	2.2573	1	
학력	중학교	30	8.067	1.4368	0.694	0.598
	고등학교	31	8.710	3.5608]	
	대학교	5	9.600	2.9665]	
	무직	31	8.645	1.8894		
	회사원	3	6.000	2.0000]	
	자영업(점포업자 등)	15	9.200	4.7689	1	
	주부	1	8.000		1	
عاً ما	공원	2	8.000	0.0000	0.700	0.000
직업	운전사	15	7.733	2.1202	0.786	0.630
	일용직	10	8.000	1.8856	1	
	종업원	14	7.714	1.5407]	
	종교인	1	8.000]	
	기타	8	9.000	2.1381]	
スコ	주거부정	13	8.923	1.5525	0.000	0.400
주거	주거일정	68	8.265	2.7623	0.832	0.408
	없음	33	8.606	2.0301		0.408
	100만원 이하	29	7.931	1.5568	0.640	
월수입	200만원 이하	26	8.000	2.3324	3.649	0.008
	300만원 이하	3	13.333	9.4516	**	
	500만원 이하	2	9.000	1.4142]	
피고인 재산	없음	64	8.063	2.0769	-1.718	0.000
유무	있음	25	9.120	3.6551]-1.718	0.089
	1천만원 이하	13	9.846	4.5798		
	5천만원 이하	4	8.500	2.5166]	
피고인 재산	1억원 이하	3	8.667	1.1547	0.490	0.743
	3억원 이하	2	10.000	2.8284]	
	5억원 초과	3	6.667	2.3094]	
	미혼	17	7.882	1.3173		
	기혼(사실혼 포함)	24	8.833	2.4964		
혼인관계	이혼	38	8.632	3.2584	0.346	0.846
	사별	5	8.400	2.1909		
	동거	1	8.000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가정 불화(결손)	없음	19	9.263	2.5131	0.473	0.639
가장 물와(결국)	있음	31	8.839	3.3773	0.473	0.039
부양가족	없음	43	8.326	1.9967	-0.039	0.969
구 장기득	있음	46	8.348	3.2195	-0.039	0.909
	양호	79	8.557	2.6782		
건강상태	중증	2	7.000	1.4142	1.226	0.298
	경증	18	7.667	1.5718		
Ηπο	동거	1	6.000			
부모의 동거 여부	이혼	6	8.333	1.5055	1.400	0.317
5/1 97	사별	2	9.000	1.4142		
	높음	7	10.000	2.8284		
가족의 관심	보통	27	8.741	1.8521	1.099	0.343
	낮음	9	9.111	1.7638		
	높음	2	12.000	2.8284		
사회적 유대관계	보통	7	9.143	1.5736	2.380	0.163
	낮음	1	8.000			
장애인 여부	불해당	96	8.250	2.4836	1.005	0.200
	해당	6	9.333	3.0111	-1.025	0.308
정신병력	없음	101	8.337	2.5151		
(경신명의	있음	1	6.000			•

2) 전과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초범 여부	아님	55	8.509	3.2482	0.901	0.371
조집 역구	해당	47	8.085	1.1764	0.901	0.371
동종전과 유무	없음	99	8.162	1.9097	-0.889	0.467
중중신과 ㅠㅜ	있음	3	13.333	10.0664	-0.009	0.407
동종전과	6월 이하	1	4.000	•		
재범기간	2년 이하	1	24.000	•	•	·
이종전과 유무	없음	49	8.000	1.2910	-1.251	0.215
이당신과 ㅠㅜ	있음	53	8.604	3.2483	-1.251	0.215
이종전과 재범기간	6월 이하	6	10.000	3.0984		
	1년 이하	5	8.400	2.6077	0.496	0.808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2년 이하	6	7.000	1.0954		
	3년 이하	5	8.400	2.9665		
	4년 이하	8	8.500	3.1623		
	5년 이하	3	7.333	2.3094		
	5년 초과	19	8.842	4.1266		
누범전과 여부	없음	100	8.260	2.4726		
구립신과 역구 	있음	1	14.000			•
집행유예 중	아님	99	8.283	2.4580	0.719	0.479
여부	해당	3	9.333	4.6188	-0.712	0.478
제37조 전단	아님	5	6.800	1.7889	1 207	0.100
경합범 여부	해당	97	8.392	2.5272	-1.387	0.168
제37조 후단	없음	100	8.280	2.5109	-0.958	0.340
전과 유무	있음	2	10.000	2.8284		

3) 공범 및 범행 후 정황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ਰਾਧੀ ਨੀ ਸ	단독범	11	7.455	1.5725	-1.203	0.232
공범 여부	공범	91	8.418	2.5909	1.203	0.232
자수·자복 여부	없음	94	8.234	2.5376	1 620	0.105
사구·사측 역구	있음	3	10.667	2.3094	-1.638	0.105
	전부자백	91	8.110	2.0080		
자백 여부	일부자백	6	11.000	6.6633	4.051*	0.020
	전부부인	5	8.800	1.0954		

 $p < 0.05 \rightarrow^*, \quad p < 0.01 \rightarrow^{**}, \quad p < 0.001 \rightarrow^{***}$

4) 범행동기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다른 범죄	없음	81	8.469	2.6319	1 000	0.224
수단으로 사용	있음	20	7.700	1.9762	1.223	
범죄 이외 다른	없음	93	8.387	2.5411	0.052	0.242
행위의 수단으로	있음	8	7.500	2.3299	0.953	0.343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사용						
신분, 경력, 재산	없음	64	8.375	2.9358	0.250	0.727
등 위장	있음	37	8.216	1.6182	0.350	
밀입국	없음	75	8.453	2.8010	1.235	0.220
2 日 寸	있음	26	7.923	1.4401	1.233	
경제적 이득	없음	55	7.927	1.8038	_1 625	0.107
취득	있음	46	8.783	3.1405	-1.635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5) 범행방법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단순 수작업	없음	52	8.808	2.9174	2.010*	0.046
	있음	47	7.787	1.9664	2.019*	0.046
전문가 위탁	없음	84	8.238	2.5108	-0.784	0.435
	있음	15	8.800	2.8082]-0.784	0.433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6) 객관적 인자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문서 등의 종류	일반문서	86	8.419	2.6233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10	7.600	2.0656	0.461	0.632
	기타	1	8.000			
공문서의 종류	주민등록증(주민등록 표 등·초본 포함)	1	8.000		0.083	0.779
	기타	11	7.455	1.8091		
고려즈되이보이	등기부	8	8.750	3.1960		
공정증서원본의 종류	가족관계등록부	91	8.308	2.4931	0.385	0.681
0 11	기타	2	7.000	1.4142		
	외국 공문서	1	8.000			
사문서의 종류	위임장	2	11.000	4.2426	0.570	0.694
	계약서	2	7.000	1.4142	0.578	0.684
	각종 회의록 또는	1	8.000	•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의사록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7) 피해자 특성 및 피해 회복

단위: 명,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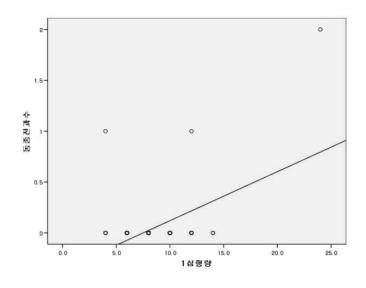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배우자	2	7.000	1.4142		
	직계존속	1	14.000			
리그이코이 코게	기타 친인척	1	6.000		0.005	0 505
피고인과의 관계	직장관계	1	8.000		0.805	0.585
	모르는 사람	3	8.000	4.0000		
	기타	4	10.000	3.6515		
합의 여부	전부 합의	3	10.000	5.2915	0.002	0.779
	미합의	4	9.000	3.4641	0.093	0.7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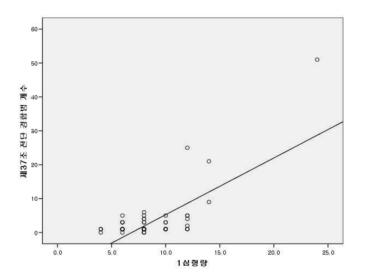
 $p < 0.05 \to *, p < 0.01 \to **, p < 0.001 \to ***$

8) 연속형 변수에 대한 형량의 상관분석

양형인자	인자 평균	인자 표준편차	상관계수
88 11시	ਹਨਾ ਤੁਸ	한가 표한인가	(피고인수)
동종 전과 수	0.04	0.244	0.504(102)***
이종 전과 수	2.09	2.925	0.192(102)
제37조 전단 경합범 개수	2.32	5.575	0.715(102)***
공범의 수	1.86	1.424	0.232(95)*
명의자 수	0.77	0.599	-0.251(11)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바.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1) 피고인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7J FH	남자	18	8.000	3.2176	1 040	0.308
성별	여자	11	6.909	1.6404	1.040	0.300
	초등학교	4	10.000	5.6569		
학력	중학교	3	6.667	2.3094	0 060	0.483
9 9	고등학교	10	7.200	2.3476	0.860	0.400
	대학교	2	8.000	0.0000		
피고인 연령	30세미만	1	8.000		0.035	0.997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40세미만	7	7.714	1.7995		
	50세미만	12	7.667	3.9848]	
	60세미만	7	7.429	1.5119]	
	70세미만	2	7.000	1.4142		
	무직	9	8.000	4.1231		
	회사원	2	7.000	1.4142]	
	자영업(점포업자 등)	4	8.000	1.6330		
직업	공원	2	8.000	0.0000	1.056	0.419
	일용직	1	4.000			
	종업원	8	6.500	1.4142]	
	기타	2	11.000	1.4142]	
スコ	주거부정	4	6.000	1.6330	1 001	0.007
주거	주거일정	20	7.700	2.9930	-1.091	0.287
월수입	없음	5	10.800	4.6043		
	100만원 이하	8	6.750	1.4880	0.079	0.100
절구입 -	200만원 이하	5	6.800	2.6833	2.273	0.122
	500만원 이하	1	8.000			
피고인 재산	없음	15	7.333	2.2254	0.071	0.790
유무	있음	4	7.000	2.0000	0.271	
	1천만원 이하	1	4.000			
피고인 재산	5천만원 이하	2	8.000	0.0000] .	
	5억원 초과	1	8.000]	
	미혼	6	6.333	1.9664		
ਨੂੰ ਨੀ ਹੀ ਹੀ	기혼(사실혼 포함)	9	8.667	2.0000	0.000	0.450
혼인관계	이혼	7	8.571	4.2762	0.903	0.458
	사별	1	8.000]	
기기 보험(거소)	없음	5	8.400	1.6733	0.000	1 000
가정 불화(결손)	있음	10	8.400	3.5024	0.000	1.000
비아기조	없음	13	6.615	1.7097	-2.538	0.000
부양가족	있음	8	8.750	2.1213	*	0.020
7] 7] x] ril	양호	20	7.800	3.1722	0.620	0.400
건강상태	경증	4	6.500	1.0000	0.638	0.433
부모의	동거	2	4.000	0.0000	1 000	0.499
동거 여부	이혼	2	6.000	2.8284	1.000	0.423
	높음	1	8.000			
가족의 관심	보통	10	9.000	3.9158	0.054	0.947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낮음	1	8.000			
사항적 이미하게	높음	1	8.000		0.062	0.826
사회적 유대관계	보통	3	7.333	2.3094	0.063	0.620
장애인 여부	불해당	26	7.769	2.8469	1.050	0.900
	해당	3	6.000	0.0000	1.059	0.299

2) 전과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초범 여부	아님	14	8.000	3.5082	0.770	0.449
조림 역구	해당	15	7.200	1.8205	0.779	0.443
도즈리키 ㅇㅁ	없음	28	7.643	2.7784		
동종전과 유무	있음	1	6.000			•
시조거기 ㅇㅁ	없음	16	7.250	1.7701	0.795	0.474
이종전과 유무	있음	13	8.000	3.6515	-0.725	0.474
	6월 이하	1	10.000			
	2년 이하	3	11.333	5.7735		
이종전과	3년 이하	1	6.000	•	0.765	0.603
재범기간	4년 이하	1	6.000		0.705	0.003
	5년 이하	2	6.000	0.0000		
	5년 초과	5	7.200	3.0332		
누범전과 여부	없음	28	7.214	1.9121		
구입선과 역구	있음	1	18.000			•
제37조 후단	없음	27	7.481	2.8062	-0.740	0.460
전과 유무	있음	2	9.000	1.4142	-0.749	0.460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3) 공범 및 범행 후 정황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자수·자복 여부	없음	27	7.630	2.8304		
	있음	1	6.000		•	•
자백 여부	전부자백	27	7.556	2.8465	0.094	0.879
	전부부인	1	8.000		0.024	0.679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바서 여부	없음	1	6.000			
반성 여부	있음	17	7.882	3.1993	•	•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4) 범행동기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다른 범죄	없음	19	7.053	3.0817	-1.472	0.152
수단으로 사용	있음	10	8.600	1.6465	-1.4/2	0.102
범죄 이외 다른	없음	28	7.643	2.7784		
행위의 수단으로 사용	있음	1	6.000			•
신분, 경력, 재산	없음	23	7.478	3.0282	-0.408	0.686
등 위장	있음	6	8.000	1.2649	-0.406	
밀입국	없음	23	7.826	2.9488	0.010	0.366
三百十	있음	6	6.667	1.6330	0.919	0.300
경제적 이득	없음	19	7.684	1.7967	0.261	0.706
취득	있음	10	7.400	4.1150	0.201	0.796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5) 범행방법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단순 수작업	없음	8	7.500	1.4142	2.066	0.066
	있음	4	9.500	1.9149	-2.066	0.000
전문가 위탁	없음	10	8.200	1.9889	0.197	0.904
	있음	2	8.000	0.0000	0.137	0.894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6) 문서 등의 종류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문서 등의 종류	일반문서	1	10.000		0.795	0.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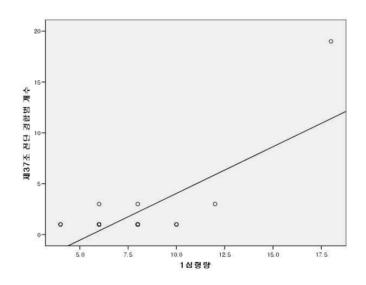
단위: 명,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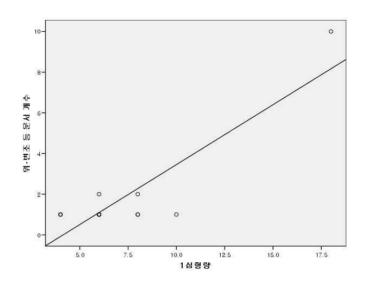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28	7.500	2.7555		

7) 연속형 변수에 대한 형량의 상관분석

양형인자	인자 평균	인자 표준편차	상관계수 (피고인수)
동종전과 수	0.03	0.171	-0.111(29)
이종전과 수	2.12	3.582	-0.029(29)
제37조 전단 경합범 개수	1.68	3.121	0.751(29)***
공범의 수	2.15	0.744	-0.033(29)
위·변조 등 문서 개수	1.61	2.118	0.879(16)***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피고인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성별	남자	12	8.500	1.9306	0.897	0.389
78 Έ	여자	5	8.000	0.0000	0.097	0.369
	30세미만	1	8.000	•		
	40세미만	2	7.000	1.4142		
피고인 연령	50세미만	8	8.500	1.4142	2.235	0.126
	60세미만	5	8.000	1.4142		
	70세미만	1	12.000			
	초등학교	2	10.000	2.8284		
학력	중학교	8	8.250	1.2817	1 115	0.382
9 9	고등학교	2	8.000	0.0000	1.115 0.	
	대학교	4	7.500	1.9149		
	무직	4	8.000	0.0000		
	기업체 임원	2	8.000	2.8284		
	회사원	2	11.000	1.4142		
	자영업(점포업자 등)	2	7.000	1.4142		
직업	공원	1	8.000		2.169	0.162
	운전사	2	10.000	0.0000		
	일용직	1	6.000			
	종업원	1	8.000			
	종교인	1	8.000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スカ	주거부정	1	8.000			
주거	주거일정	11	8.727	1.8488		•
	없음	4	9.500	1.9149		
월수입	100만원 이하	3	8.667	1.1547	2.199	0.141
超十省	200만원 이하	8	7.750	1.2817	2.199	0.141
	500만원 이하	1	6.000			
피고인 재산	없음	7	8.000	1.1547	-0.311	0.761
유무	있음	7	8.286	2.1381	-0.311	0.701
	1천만원 이하	1	12.000			
피고인 재산	1억원 이하	3	7.333	1.1547	3.143	0.151
	3억원 이하	3	8.000	2.0000		
	미혼	2	8.000	0.0000		0.877
	기혼(사실혼 포함)	6	8.333	2.3381		
호 이 피 네	이혼	2	9.000	1.4142	0.240	
혼인관계	사별	2	8.000	0.0000	0.340	
	동거	2	7.000	1.4142		
	별거(가출)	2	9.000	1.4142		
가정 불화(결손)	없음	1	8.000			
/ f/8 출와(설문) 	있음	1	10.000			•
부양가족	없음	3	8.000	0.0000	-0.289	0.777
ー するパラ 	있음	13	8.308	1.7974	-0.269	0.777
	양호	13	8.154	1.2810		
건강상태	중증	1	6.000		3.587	0.055
	경증	3	10.000	2.0000		
범행당시	심신미약	1	8.000	•	0.049	0 000
심신장애 여부	없음	16	8.375	1.6683	0.048	0.830

2) 전과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초범 여부	아님	8	8.500	1.4142	0.343	0.736
	해당	9	8.222	1.8559	0.343	0.730
동종전과 유무	없음	15	8.400	1.7238	0.210	0.754
	있음	2	8.000	0.0000	0.319	0.754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시즈키키 이미	없음	10	8.200	1.7512	-0.454	0.656
이종전과 유무	있음	7	8.571	1.5119	-0.434	0.656
	1년 이하	1	8.000		4	
이종전과	2년 이하	1	10.000		0.490	0.740
재범기간	5년 이하	1	8.000		0.429	0.748
	5년 초과	4	8.000	1.6330		
제37조 전단	아님	5	8.400	0.8944	0.075	0.041
경합범 여부	해당	12	8.333	1.8749	0.075	0.941

3) 공범 및 범행 후 정황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공범 여부	단독범	8	8.750	1.0351	0.051	0.257
	공범	9	8.000	2.0000	0.951	0.357
자백 여부	전부자백	13	8.462	1.6641		
	일부자백	3	8.667	1.1547	1.167	0.340
	전부부인	1	6.000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4) 범행동기

단위: 명, 월

아취이기	*). ㅁ	人	154 T	サスポミ	E II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다른 범죄	없음	12	8.333	1.1547	-0.055	0.958
수단으로 사용	있음	5	8.400	2.6077	-0.055	0.900
범죄 이외 다른	없음	15	8.133	1.5976		
행위의 수단으로	있음	2	10.000	0.0000	-1.607	0.129
사용	77. 1	_		010000	_	
신분, 경력, 재산	없음	14	8.286	1.7289	-0.360	0.724
등 위장	있음	3	8.667	1.1547	-0.300	
미이그	없음	13	8.615	1.7097	1.224	0.240
밀입국	있음	4	7.500	1.0000	1.224	0.240
경제적 이득	없음	12	8.333	1.8749	-0.075	0.041
취득	있음	5	8.400	0.8944	-0.075	0.941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5) 범행방법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단순 수작업	없음	9	7.778	1.2019	_0 199	0.052
	있음	6	9.333	1.6330	-2.133	0.000
전문가 위탁	없음	14	8.429	1.6036		
	있음	1	8.000	•	•	•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6) 객관적 인자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일반문서	11	8.545	1.8091		
문서등의 종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3	7.333	1.1547	0.662	0.532
	기타	2	8.000	0.0000		
고기즈기이버시	등기부	5	8.400	2.1909		
공정증서원본의 종류	가족관계등록부	11	8.364	1.5015	0.023	0.977
रु ग	기타	1	8.000			
사문서의 종류	차용증(대출신청서 포함)	1	8.000			
	각종 회의록 또는 의사록	2	8.000	2.8284	0.188	0.853
	기타	1	10.000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단위: 명, 월

						• / -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피고인과의 관계	배우자	2	9.000	1.4142		
	직계존속	1	8.000		1.000	0.500
	기타	2	7.000	1.4142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7) 연속형 변수에 대한 형량의 상관분석

양형인자	인자 평균	인자 표준편차	상관계수 (피고인수)
동종 전과 수	0.09	0.288	-0.082(17)
이종 전과 수	1.65	2.124	-0.042(17)
제37조 전단 경합범 개수	2.13	1.632	0.347(17)
공범의 수	0.96	1.186	-0.109(17)
명의자 수	0.67	0.500	0.000(4)

아.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성별	남자	59	8.441	3.2815	2.751	0.007
/상 달 	여자	18	6.167	2.2029	**	0.007
	30세미만	6	7.667	1.9664		
	40세미만	15	7.533	1.9591		
피고인 연령	50세미만	29	7.621	3.4684	0.707	0.590
	60세미만	15	7.800	3.4682		
	70세미만	12	9.333	3.9389		
	무학	1	10.000			
	초등학교	10	9.400	5.1897		
학력	중학교	7	6.429	1.1339	0.924	0.456
	고등학교	28	8.143	3.1706		
	대학교	18	7.889	2.7842		
	무직	30	8.000	3.6103		
	기업 대표이사	3	10.667	6.4291		
	회사원	11	8.364	3.5573		
	자영업(점포업자 등)	8	7.250	2.1213		
직업	기타 전문직	1	8.000	•	0.431	0.914
역 id 	주부	1	8.000	•	0.431	0.914
	운전사	3	8.000	2.0000		
	일용직	8	6.625	2.1998		
	종업원	7	7.714	3.1472		
	기타	4	7.500	1.9149		
주거	주거부정	1	8.000			
十/1	주거일정	54	7.630	2.9798	•	•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없음	22	7.682	2.9823		
	100만원 이하	10	7.500	1.9579		
이스이	200만원 이하	17	6.706	1.9926	4.193	0.000
월수입	300만원 이하	3	8.667	1.1547	**	0.003
	400만원 이하	1	8.000			
	500만원 이하	1	18.000			
피고인 재산	없음	29	7.448	2.8734	0.026	0.252
유무	있음	30	8.300	4.0013	-0.936	0.353
	1천만원 이하	11	8.182	3.8683		
	5천만원 이하	6	8.667	5.8878		
되고이 레시	1억원 이하	6	7.500	2.5100	0.014	0.050
피고인 재산	3억원 이하	4	10.000	5.4160	0.214	0.953
	5억원 이하	1	8.000			
	금액 확인불가	2	7.000	1.4142		
	미혼	10	6.700	1.8886		0.641
	기혼(사실혼 포함)	35	8.229	3.6869		
호 이 되 게	이혼	12	8.083	4.1001	0.670	
혼인관계	사별	1	10.000		0.679	
	동거	1	6.000			
	별거(가출)	3	5.667	0.5774		
기기 보위(커스)	없음	33	7.879	3.3518	0.000	0.004
가정 불화(결손)	있음	14	7.857	3.6344	0.020	0.984
비아기조	없음	12	7.250	2.2208	0.500	0.500
부양가족	있음	52	7.885	3.6009	-0.583	0.562
	양호	50	7.500	3.0321		
건강상태	중증	2	13.000	7.0711	3.206*	0.047
	경증	12	7.500	2.2764		
가족의관심	높음	8	8.250	4.3342		
	보통	25	8.520	4.1745	0.024	0.976
	낮음	2	8.000	0.0000		
자레이 어ㅂ	불해당	75	7.800	3.0135	_0.600	0.611
장애인 여부	해당	2	12.000	8.4853	-0.699	0.611

2) 전과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રુમો તો ધ	아님	51	8.373	3.6053	1.000	0.075
초범 여부	해당	26	7.000	1.9596	1.806	0.075
도조 기기 이미	없음	68	7.809	3.0822	0.754	0.450
동종 전과 유무	있음	9	8.667	4.1231	-0.754	0.453
	6월 이하	2	7.000	1.4142		
동종 전과	2년 이하	1	10.000		0.356	0.788
재범기간	5년 이하	1	6.000		0.550	0.700
	5년 초과	4	10.500	5.7446]	
이종 전과 유무	없음	26	7.000	1.9596	1 906	0.075
이중 신작 ㅠㅜ	있음	51	8.373	3.6053	-1.806	0.075
	6월 이하	5	8.600	5.8138		
	1년 이하	5	8.400	2.6077]	
이종 전과	2년 이하	11	6.545	1.2933	1.262	0.295
지능 선과 재범기간	3년 이하	7	7.714	3.1472		
세됩시신	4년 이하	3	7.333	2.3094		
	5년 이하	3	12.000	6.9282		
	5년 초과	16	8.750	2.9098		
누범전과 여부	없음	75	7.800	3.0135	-0.699	0.611
구립신각 역구 	있음	2	12.000	8.4853	-0.699	0.011
출소 후	6월 이하	1	18.000			
재범기간	2년 이하	1	6.000	•		•
집행유예 중	아님	74	7.932	3.2407	0.316	0.753
여부	해당	3	7.333	2.3094	0.510	0.755
제37조 전단	아님	40	6.925	2.6252	-2.944	0.004
경합범 여부	해당	37	8.973	3.4519	**	0.004
제37조 후단	없음	71	8.127	3.1934	2.099*	0.039
전과 유무	있음	6	5.333	2.0656	4.099*	0.039

3) 공범 및 범행 후 정황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공범 여부	단독범	33	7.394	2.9468	-1.227	0.224
8 월 역구 	공범	44	8.295	3.3590	-1.221	0.224
자수·자복 여부	없음	59	8.068	3.3777	•	

	-3		-3-		_	_
양형인자	항목	宁	평균	표준편차	F	P
	있음	1	6.000			
	전부자백	64	7.859	3.3753		
자백 여부	일부자백	4	8.500	1.0000	0.074	0.929
	전부부인	3	8.000	2.0000		
반성 여부	없음	2	11.000	9.8995	0.533	0.688
[변경 역구	있음	45	7.267	2.0715	0.555	0.000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4) 범행계획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비케케취	우발적	3	6.333	1.5275	_0.850	0.200
범행계획	계획적	73	7.945	3.2527	-0.850	0.398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5) 범행동기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다른 범죄	없음	66	7.652	2.7484	_1 159	0.274
수단으로 사용	있음	11	9.455	5.0668	-1.152	0.274
범죄 이외 다른	없음	67	8.015	3.3822		
행위의 수단으로 사용	있음	10	7.200	1.3984	0.749	0.456
신분, 경력, 재산	없음	32	8.313	3.9056	0.932	0.354
등 위장	있음	45	7.622	2.5962	0.932	0.354
밀입국	없음	69	7.928	3.3047	0.148	0.883
큰 남 수	있음	8	7.750	2.2520	0.140	0.000
경제적 이득	없음	57	7.912	3.2031	0.015	0.988
취득	있음	20	7.900	3.2751	0.013	0.900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6) 범행방법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단순 수작업	없음	59	7.559	2.8362	-2.088	0.040
인단 구석됩	있음	15	9.467	4.2404	*	0.040
복사기 사용	없음	70	7.886	3.0671	-0.369	0.736
7/1/1/18	있음	4	9.000	6.0000	-0.309	0.730
전문적 인쇄기	없음	73	7.973	3.2445		
사용	있음	1	6.000	•	•	•
컴퓨터 사용	없음	66	7.652	2.8635	-1.507	0.172
4TH //8	있음	8	10.375	5.0125	1.507	0.172
전문가 위탁	없음	33	8.909	4.0028	2.237*	0.030
인천기 위탁	있음	41	7.171	2.2012	2.231*	0.030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7) 객관적 인자

단위: 명, 월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문서 등의 종류	일반문서	69	8.116	3.2564	3.217	0.077
전시 등의 등표	기타	7	5.857	2.0354	3.217	0.077
	주민등록증(주민등록	21	8.524	3.9952		
	표 등·초본 포함)	21	0.024	0.5502		
공문서의 종류	운전면허증	2	6.000	0.0000	0.696	0.558
	학업관련증명서	5	6.800	1.7889		
	기타	49	7.837	2.9745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8) 피해자 특성

단위: 명,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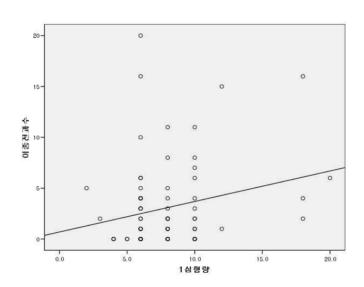
양형인자	항목	수	평균	표준편차	F	P
	아는 사람	1	6.000			
피고인과의 관계	모르는 사람	6	7.667	2.3381	0.364	0.706
	기타	4	8.000	1.6330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9) 연속형 변수에 대한 형량의 상관분석

양형인자	인자 평균	인자 표준편차	상관계수 (피고인수)
동종전과 수	0.21	0.709	0.112(77)
이종전과 수	3.03	4.218	0.227(77)*
제37조 전단 경합범 개수	1.62	2.600	0.194(77)
공범의 수	1.41	2.060	0.211(77)
명의자 수	1.22	0.650	0.236(57)
위·변조 등 문서 개수	11.15	45.397	-0.224(54)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2. 형량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가. 공문서 변조

양형인자	В	Beta	t
(상수)	6.936		4.624**
1심 변호인	2.069	0.724	5.082**
동종전과유무	-9.696	-1.058	-8.120***
이종전과유무	3.439	0.709	4.456**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부	-0.951	-0.208	-1.734
공범의 수	-2.123	-0.438	-3.335*
전문가 위탁	-1.322	-0.197	-1.801

양형인자	В	Beta	t
명의자 수	-1.866	-0.204	-1.689
$R^2-value$		0.928	
F	12.983**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형량에 대한 양형인자들의 반응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1심 변호인, 동종전과 유무, 이종전과 유무, 공범의 수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종전과 유무>1심변호인>이종전과 유무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나. 공문서 부정행사

양형인자	В	Beta	t
(상수)	5.580		4.162**
이종전과 수	-0.387	-0.494	-1.933
동종전과 유무	-3.785	-0.695	-2.851*
범행계획	4.418	0.702	2.633*
$R^2 - value$	0.631		
F	3.985		

 $p < 0.05 \rightarrow^*, \quad p < 0.01 \rightarrow^{**}, \quad p < 0.001 \rightarrow^{***}$

동종전과 유무, 범행계획이 유의미한 경향을 보여서 이들 인자들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행계획>동종전과 유무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다. 공문서 위조

양형인자	В	Beta	t
(상수)	7.831		20.249***
1심 변호인	-0.659	-0.152	-3.513***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부	0.982	0.145	3.050**
제37조 전단 경합범 개수	0.083	0.120	2.594**
신분, 경력, 재산 등 위장	0.657	0.101	2.173*
경제적 이득 취득	1.562	0.185	3.851***
단순 수작업	1.074	0.071	1.687
복사기 사용	-2.048	-0.081	-1.909

양형인자	В	Beta	t
컴퓨터 사용	-0.902	-0.105	-2.481*
명의자 수	0.385	0.140	3.017**
$R^2-value$	0.202		
F	12.954***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1심 변호인,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부, 제37조 전단 경합범 개수, 범행동기 (신분, 경력, 재산 등 위장), 범행동기(경제적 이득 취득), 범행방법(컴퓨터 사용), 명의자 수 등의 양형인자가 유의미한 경향을 나타내어, 이들 양형인자들이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라. 공전자기록불실기재

양형인자	В	Beta	t
(상수)	9.477		6.016***
1심 변호인	2.104	0.875	4.954***
초범 여부	1.728	0.433	2.487*
제37조 전단 경합범 개수	0.205	0.633	4.000**
다른 범죄 수단으로 사용	3.642	0.567	3.933**
밀입국	-4.685	-1.048	-3.319**
단순 수작업	-5.202	-1.274	-3.402**
전문가 위탁	-4.935	-0.914	-3.849**
명의자 수	-1.537	-0.376	-2.421*
$R^2-value$		0.851	
F		7.138**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1심 변호인, 초범 여부, 제37조 전단 경합범 개수, 범행동기(다른 범행 수단으로 사용), 범행동기(밀입국), 범행방법(단순 수작업), 범행방법(전문가 위탁), 명의자 수의 양형인자들이 유의미한 경향을 보여서 이들 양형인자들이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양형인자	В	Beta	t
(상수)	8.022		3.795***

양형인자	В	Beta	t
초범 여부	3.787	0.750	2.784**
동종전과 수	2.138	0.212	1.940
이종전과 유무	3.618	0.718	2.637**
제37조 전단 경합범 개수	0.218	0.501	4.635***
공범의 수	0.401	0.218	3.000**
범행계획	-4.605	-0.188	-2.670**
다른 범죄 수단으로 사용	-0.935	-0.152	-2.147*
$R^2-value$		0.602	
F		18.340***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초범여부, 이종전과 유무, 제37조 전단 경합범 개수, 공범의 수, 범행계획, 범행동기(다른 범죄 수단으로 사용) 등의 양형인자가 유의미한 경향을 보여서이들 양형인자들이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바.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양형인자	В	Beta	t
(상수)	5.605		13.385***
이종전과 수	0.150	0.195	1.945
제37조 전단 경합범 개수	0.747	0.914	10.352***
제37조 후단 전과 유무	3.736	0.351	3.879
다른 범죄 수단으로 사용	2.010	0.354	3.649
경제적 이득 취득	-1.909	-0.336	-2.816
$R^2-value$		0.844	
F		24.873***	

 $p < 0.05 \rightarrow *, p < 0.01 \rightarrow **, p < 0.001 \rightarrow ***$

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양형인자	В	Beta	t
(상수)	6.767		8.170***
이종전과 수	-0.351	-0.427	-1.304
제37조 전단 경합범 개수	0.415	0.466	1.992
공범의 수	0.312	0.250	0.790
범죄 이외 다른 행위의 수단으로 사용	3.685	0.756	2.490*

양형인자	В	Beta	t
신분, 경력, 재산 등 위장	1.464	0.356	1.314
경제적 이득 취득	0.921	0.267	1.057
$R^2-value$	0.480		
F	1.541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아. 위조공문서행사

양형인자	В	Beta	t
(상수)	3.756		3.334**
이종전과 유무	2.257	0.322	2.555*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부	1.741	0.274	2.062*
밀입국	2.038	0.192	1.532
단순 수작업	3.030	0.310	2.472*
복사기 사용	2.906	0.179	1.393
컴퓨터 사용	2.510	0.257	2.039*
명의자 수	0.607	0.121	0.888
$R^2 - value$	0.371		
F	3.870**		

 $p < 0.05 \rightarrow^*, p < 0.01 \rightarrow^{**}, p < 0.001 \rightarrow^{***}$

이종전과 유무, 제 37조 전단 경합범 여부, 범행방법(단순 수작업), 범행방법 (컴퓨터 사용)등의 양형인자가 유의미한 경향을 보여서 이들 양형인자들이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